

HABITAT II

등록번호	
6-6	I

세계주거회의(HABITAT II)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

장/립/기/념/토/론/회

일 시 : 1995년 10월 9일 오후2시 ~ 4시

장 소 : 흥사단 강당

세계주거회의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준)

(서울 성북구 성북2동 75-12 / 전화: 3673-3031~3 전송: 3673-3278)

전국도시변민협의회, 주거권실현을 위한한국민언협,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 전주고도시변민회, 거동고도시변민선교협의회, ACHR한국위원회, YWCA,
전주고서울대고구려사회사무보관단사무위원회, 연극도시연구소 참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세계주거회의(HABITAT II)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

창/립/기/념/토/론회

◆ HABITAT II 준비총동원 회의 및 창립기념행사
◆ 주제 : HABITAT II 준비총동원 회의 및 창립기념행사
◆ 일정 : 1995년 10월 9일 오후 2시 ~ 4시

◆ 일 시 : 1995년 10월 9일 오후 2시 ~ 4시

장 소 : 흥사단 강당

◆ 세계주거회의에 대한 민간 참여를 위한 모임
(국내외 주요 민관 기관 및NGO, 전문가 등)

◆ 세계주거회의(HABITAT II) 준비와 함께하는
국내외 주요 민관 기관 및NGO, 전문가 등

세계주거회의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준)

(서울 성북구 성북2동 75-12 / 전화: 3673-3031~3 전송: 3673-3278)

전국도시번민연합회, 주거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저소득부녀연합회, 전주고도시번민회, 광주고도시번민연합회, ACHR한국위원회, YWCA,
전주고서울대고교사회사업부번민사무의연회, 연극도시연구소 청관; 민족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서/순/집/료/자/회/론/토/

발간사.....	3
주제 발표문	5

● 부 록 ●

HABITAT II 준비토론회(95. 05. 23) 자료모음.....	23
--	----

◆ HABITAT II 96 이스탄불 회의의 의의와 준비.....	24
--------------------------------------	----

- 도시정상회담(Sity Summit)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 유재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 '96 세계주거회의(HABITAT II)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35
---	----

- ☞ 김영준(주거권실현을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

◆ 세계주거회의에 바람직한 참여를 위한 준비.....	37
-------------------------------	----

- ☞ 박문수(ACHR 한국위원회 상임대표)

◆ 세계주거회의(HABITAT II) 준비와 참여의 필요성.....	39
---------------------------------------	----

- ☞ 하성규(한국도시연구소 소장)

◆ HABITAT II 세계 행동계획.....	41
---------------------------	----

◆ HABITAT II 원칙의 조인과 전세계적인 행동 계획.....	46
---------------------------------------	----

- ☞ HABITAT II 준비회의에 대한 사무총장의 보고

■ 발간사 —————

21세기 새로운 도시개발 전략수립과 주거권 확립을!!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제2차 세계주거회의(HABITAT II)'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를 창립합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한국민간위원회'의 창립은 단순히 96년 6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되는 HABITAT II 참여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한국민간위원회'의 활동은 전문가(이론가) 중심, 상층 명망가 중심의 '보고서 작성'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계주거회의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는 철저하게 지역과 주민(특히 주거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저소득주민)과 그들의 삶과 투쟁을 중심으로 국민대중과 함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도시문제와 주거문제의 본질을 파헤치고자 합니다. 나아가 20여년에 걸친 저소득주민들의 삶과 투쟁, 그들의 희망을 하나로 모아내어 21세기의 새로운 도시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주거권'의 확립과 올바른 정책대안을 만들어 내려 합니다.

이러한 '한국민간위원회'의 지향에 따라 '한국민간위원회 창립 기념토론회'가 준비되었습니다. 오늘의 토론회는 지난 5월23일의 'HABITAT II 준비를 위한 준비토론회'의 연속이며, 앞으로 더욱더 심화되고 발전되는 다양한 형태의 정책논의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는 저소득주민을 중심으로 한 국민대중의 실천을 통해 우리사회의 도시문제와 주거문제에 대한 정책대안 수립의 출발점이 될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 민간 사회단체, 관심있는 모든분들, 나아가 주거 정책담당자들의 보다 많은 관심을 기대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풍부한 내용의 주제발표를 준비해 주신 하성규 교수님과 약정토론에의 참여를 흔쾌히 승락해 주신 김혜경 의원님, 김형태 변호사님, 조홍식 교수님, 유재현 총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가지 미숙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오늘의 토론회를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5. 10. 09

세계주거회의(HABITAT II)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
집행위원장 박종렬

인간적 주거환경과 주거권

하 성 규(중앙대 지역개발학과 교수)

목 차

I. 서론

II. 인간적 주거환경의 확보

1. 주거실태
 2. 인간적 주거환경의 필요성
 3. 세계주거회의(HABITAT II)의 목적과 내용

III. 주거권의 보장과 발전방향

1. 주거권의 개념
 2. 국제적 동향
 3. 한국의 현실

IV. 세계주거회의와 NGOs와 CBOS의 역할

I. 서론

인간의 주거행위는 단순한 생물적 서식행위가 아니고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주거는 인간의 사회·경제적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초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개개인의 책임과 노력이 필요하며,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힘든 부분은 국가의 책임이 따른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는 주거빈곤의 해결이다. 정부는 OECD가입을 준비하는 등 선진국 문턱에 도달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국민의 주거상황은 세계 어떤 선진국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 투성이며 열악하다. 주거빈곤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최저의 주택소요」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이며 「최저주거기준」이하의 열악한 주거상황을 말한다. 정부는 주거빈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거빈곤에 대한 정책이 과행적이고 소극적이다. 아울러 국가는 국민의 건강하고 폐적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고 못하고 있다.

인간정주에 관한 유엔의 관심은 이미 오래 전(1975년)부터 시작되었고 1996년 제2차 세계주거회의(HABITAT II)가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개최된다. 인간정주 및 주거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인간다운 주거환경을 위한 논의에 중점을 두고 주거권관련 국제동향 및 주거권의 보장과 발전방향 그리고 이를 위한 NGO와 CBO의 역할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인간적 주거환경의 확보

1. 주거실태

우리 나라 대도시의 주거수준은 점차 향상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의 경우 가구당 사용방수, 1인당 사용방수, 가구당 사용면적, 그리고 수세식화장실 및 온수시설등 지난 20여년간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지역의 자가소유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동시 남의 집에 세들어 사는 임차가구수 비중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단칸방 거주가구수도 1990년 현재 서울시 전체가구의 31.47%를¹⁾ 차지하고 있다(표 1 참조)

(표1) 단칸방 거주 가구의 비율(1990)

단위: %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가구수
전국	24.1	23.2	23.6	22.0	6.3	0.3	292만
서울	23.2	21.0	24.6	23.0	7.4	0.9	89만

자료: 통계청, 「인구 및 주택 총조사보고」, 1990.

이러한 조사통계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전반적인 소득의 증대와 주택의 질적 수준은 향상되고 있으나 이러한 주거수준의 향상은 모든 소득계층에 골고루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중·고소득층은 경제성장의 과실이 주거부문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나 도시 빈곤층은 오히려 주거수준이 악화되거나

1) 단칸방거주가구율 = (단칸방거주가구 - 단칸방사용단독가구) / (일반가구 - 단독가구)로 계산하면 전체가구의 약 27% 수준으로 나타난다.

나 전혀 개선되지 못하는 소득계층간 주거수준의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전체주택재고중 29평이상의 주택비중이 1975년에는 16%를 차지하였으나 1990년은 33.5%를 점하고 있다. 즉 중산층이상이 필요로 하는 주택은 급격히 증대하였으나 저소득층이 요구하는 소형-임대주택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임차가구수도 1980년은 전체가구수가 37%였으나 1990년은 40.3%로, 월세가구수도 1980년 16.5%에서 1990년 19.6%로 증가하였다.

한 조사결과보고에 의하면 서울시 무작위 표본 4,982가구 중에서 인체공학적 기준에 의한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가구는 면적 및 방수 최저기준에서 각각 21.3%와 22%로 나타났다.²⁾ 아울러 비공식통계이긴 하지만 서울시내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가구수가 약 2만가구(10만 여명)을 넘고 있으며 단장집, 별집, 지하 단칸방 그리고 일반 불량주거지에 거주하는 주민을 고려하면 서울시 전체인구의 약 30%에 달하는 사람들이 주거빈곤층으로 추정된다.

2. 인간적 주거환경의 필요성

주거문제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며 기본적 '삶의 질' 문제이다. 세계 거의 대부분 국가 헌법에 국가는 자국민의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보장한다는 국가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35조에도 '건강하고 평화로운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는 규정이 있다. 동법 제35조 제3항에는 '국가는 주택개발정책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평화로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인간다운 주거환경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택이란 개인적인 삶과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터전이다. 주택은 먹고(食) 입는(依)것과 같은 인간기본욕구의 하나이기 때문에 인종, 문화, 종교, 정치적인

2) 국토개발연구원, 「주거기준설정에 관한 연구」, 1989;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주택정책 기본방향」, 1994, pp. 21-22 참조.

이념 모든 것을 초월하여 생존의 필수 요건인 것이다. 이와 같은 원초적 기능이외에 주택은 그 생산, 분배, 소비과정에 있어 여타 재화와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위치의 고정성에 기초하여 생각해 보면 주택은 근린, 주변환경이라는 지역성이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주택은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학교, 병원 등)가 공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공의 개입과 규제적 요소를 담고 있다.

주택은 양적 문제와 질적인 문제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해당 지역의 가구수에 비하여 주택재고가 부족할 경우 주택난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나라 지난 30여년간의 높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주택재고의 증가율은 가구수의 증가율을 따라 잡지 못해 만성적 초과수요와 주택부족율을 보이고 있다.

주택의 질적 문제는 국가마다 상이하게 나타나지만 개도국을 중심으로한 여러 나라들은 최저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주민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개도국은 1980년을 기준으로 보면 평균 도시인구의 30-60%가 인간다운 주거생활 및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 지구상 약 10억명이 노숙자(homeless)이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있다. 이들 대부분 주민은 저소득층으로서 도시지역의 불량촌(squatter settlements)에 거주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국토개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인구의 약 20%는 최저주거기준이하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 통계로 집계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등 무허가주택을 포함하면 대도시 특히 서울인구의 약 30%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인간적인 삶의 조건으로 주택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제도적인 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은 아래 몇 가지 점에서 강조되고 주거에 대한 정책당국자들의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첫째, 주택은 인간생활의 원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충족은 개인의 노력 뿐 아니라 국가의 기본적인 책임과 정책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

둘째, 도시화와 산업화과정에서 발생된 도시주거환경악화에 대한 주거개선노력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셋째, 도시지역 家口 중 貸借家口가 날로 증대하고 있으며 임차가구(세입자)들의 주거권보호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결여되어 있어 이에 대한 공공부문의 적극적 개입과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넷째, 장애자가구, 노령가구, 소년·소녀가장 가구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가구에 대한 주거안정정책이 시급하다.

다섯째,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주거수준을 정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으로 정부는 최저주거기준(housing minimum standard)의 설정이 시급하다.

3. 세계주거회의(HABITAT II)의 목적과 내용

1996년 6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예정인 세계주거회의의 목적과 내용을 파악하기 이전, 20여년 전에 개최된 제1차 세계주거회의의 내용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

1976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된 제1차 세계주거회의(HABITAT I)는 인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화과정에서 발생된 다양한 문제를 토의·결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당시 UN은 세계 각국의 도시화가 급격히 진전되고 동시 도시문제가 악화일로에 있음을 확인, 이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과 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절감하였다. 전반적인 공감대의 형성으로는 도시지역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이로 인해 도시 전반적인 주거환경의 악화 그리고 저소득층이 겪고 있는 주거불평등과 차별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각국의 정부는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지원의 강화, 물리적·사회적 기반시설의 공급 등의 정부지원체계를 강조하였다.

제1차 세계주거회의(HABITAT I)에서 채택한 '인간정주 밴쿠버 선언과 행동방침(The Vancouver Declaration on Human Settlements and Plan of Action, 1976)'에서 밝혀진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간의 존엄성과 선택의 자유라는 관점에 따라 전반적 공공 복지는 인간에 필요한 기본권리이며 이는 모든 국가, 모든

사회에 보장되어야 한다(para 4).

- 해당 영토내 이주의 자유와 주거지 선택의 자유는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para 6).

-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정주에 관련된(주택, 도시계획 등) 정책과 프로그램에 개인적 혹은 집단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권리 이자 의무이다(para 13).

- 자연적 혹은 인위적 재난을 통해 집을 잃게 된 경우 재정착이 가능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는 것은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둔다(para 15).

- 적정한 수준의 주택과 서비스의 확보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a basic human rights)로 규정하며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는 책임을 진다(para 8).

한편 주거권(housing rights)에 대하여 '2000년 주거를 위한 지구전략(the Global Strategy for Shelter the Year 2000, GSS)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절한 주택의 확보는 국제적으로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모든 국가는 주택부문에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확인한다. -----모든 국가의 국민은 그들 국가에 대해 그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요구는 하나의 권리이며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철거를 통한 주거불안정을 가속시켜서는 안되며 그들의 주택을 개량·보호해야 함을 천명한다".

유엔총회의 결의에 의해 개최되는 제2차 세계주거회의(HABITAT II)의 목적은 인류가 정주하고 있는 모든 도시, 지역, 마을, 지역사회를 건강하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보다 구체화된 세계주거회의의 목적은, 첫째, 도시화문제를 국제적, 국내적으로 개발계획에서 우선순위에 놓을 것. 둘째, 도시관리와 주택개발에 있어서 새로운 정책과 전략을 수립·추구할 것. 셋째, 도시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 넷째, 도시하부시설과 서비스공

금을 위해 투자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목적 하에 1996-2000년까지 제1단계 국가적 약속을 포함한 국가 단위의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지구행동계획(Global Plan of Action)을 채택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한다.

'96년 세계주거회의는 크게 8개 영역의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는 바 이는 ①각국 정부, ②시장, 의회의원 및 비영리협회, ③시민지도자, 원로 정치인, ④민간협회, 기업협회 등, ⑤학계, ⑥인간정주관련 전문가들 ⑦지역사회지도자, ⑧비정부단체(NGOs)와 주민단체(CBOs) 대표 등이다. 유엔이 각국 정부에게 권고하고 있는 바로는 각국정부는 관련인사들로 구성된 '국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세계주거회의 이전까지 작업을 통해 1996-2000년 행동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있다.

세계주거회의 행사는 도시문제에 관한 지구회담(Global Conference), 세계도시회의(World Assembly of Cities), 세계주택 및 정주지 엑스포(EXPO) 등이다.

III. 주거권의 보장과 발전방향

1. 주거권의 개념

세계화와 국제화를 추구하는 현대 한국사회는 다양한 모순과 갈등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정부는 1996년 OECD에 가입을 목표로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우리의 경제수준이 세계선진국 대열에 있음을 확인하는 절차이며 선진국 진입의 신호탄으로 비쳐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는 국민의 상당수가 생활 최저선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下에서 빈곤과 열악한 주거생활에 시달리고 있다. 국민생활최저선은 경제적인 최저한의 소득만을 확보한다는 의미만은 아니다. 국민생활최저선이란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생활영역 전반을 포함한다. 경제적 수준으로는 세계선진국 클럽인 OECD에 가입을 추진하는 지금, 국민의 생활최저선은 확보되지 못하는 모순과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주거빈곤층이라 할 수 있는 도시 및 농촌의 수많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보장받지 못한 상태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35조)"는 전혀 확보되지 못하는 종이 위의 선언에 불과하다. 국민생활최저선의 보장은 국가의 국민에 대한 시혜적 차원의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국민에 대한 의무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청구권을 갖는 국민의 권리임을 헌법(제10조, 35조)을 통해 알 수 있다.

주거권은 무엇인가? 주거권은 주거에 관한 국민생활최저선의 확보를 의미한다. 즉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주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 적절한 거처에서 생활할 권리를 말하며 국가는 인간다운 주거환경을 확보하지 못하는 국민에 대하여 책임이 주어진다.

국가는 적절한 거처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임시거처를 마련하거나 항구적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기존의 불량하고 인간 주생활에 적합하지 못한 주택(혹은 거처)에 대하여는 그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 여러 학자들과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견해를 종합해 보면 주거권의 의미는³⁾ 매우 구체적이며 실질적이다.

첫째, 적절한 주택(adequate housing)은 모든 사람들, 즉 어린이, 여성, 남성, 그리고 인종, 종교, 문화, 소득, 연령, 시민권취득 여부, 고용상태 등 어떤 것으로부터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비차별성의 원칙(차별성 배제의

3)E. J. Anzorena, *Housing the Poor: the Asian Experience*, the Asian Coalition for Housing Rights, 1993; D. Murphy, *A Decent Place to Live*, the Asian Coalition for Housing Rights, 1990; Scott Leckie, *Towards an International Convention on Housing Rights: Options at HABITAT II*, the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Washington, D.C. 1994.

원칙)이다. 둘째, 모든 사람들을 적절한 주택에서 살아가야 하는 권리를 지니고 있음과 동시에 적절한 주택이란 모든 사람들이 접근 가능하며, 이용 가능하며, 안전해야 하며, 그리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처(집)를 말한다. 즉 접근-이용 가능성이 원칙이다.

셋째, 무주택자(노숙자를 의미함)는 국가(혹은 공공기관)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이들을 위해 국가는 임시거처를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무주택자(homeless) 우선의 원칙이다.

넷째, 모든 세입자(임차가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세입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퇴거 당하거나, 철거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임차가구(세입자) 보호원칙(security of tenure)이라 할 수 있다. 세입자는 폭력, 부동산투기, 철거 등에 의해 주거가 불안정하지 않도록 정부는 법적으로 세입자를 보호해야 한다.

다섯째, 모든 사람들은 안전한 물, 전기, 채광, 상하수도, 도로 등 공공서비스와 지역사회 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이는 주거서비스를 보장받을 원칙이다.⁴⁾

2. 국제적 동향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유엔의 주거권에 대한 논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주택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은 모든 국가가 인간으로서 최저주거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이는 인간다운 삶의 조건으로 주거안정이 가장 중요하며 이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제로 본다. 아울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에서 가난한 세입자

4)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에서는 '적절한 주택을 위한 권리(the rights to adequate housing)'를 7가지 기준으로 제시되었다; ① legal security of tenure; ② availability of services, materials and infrastructure; ③ affordability; ④ habitability; ⑤ accessibility; ⑥ location; and ⑦ culturally adequate.

등이 강제적으로 철거당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보호하자 것이다.

이러한 경향을 잘 나타내는 움직임이 유엔을 통해 전개되고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UN Commission on Human Rights)는 1993년 3월 10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49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아래 사항을 결의하였다(결의안 제77호).

- (1) 인간의 주거권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강제철거는 명백히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 (2) 모든 정부는 강제철거가 행해지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권고한다.
- (3) 강제철거의 위협을 받고 있는 모든 주민에 대하여 법적인 주거안전 조치를 마련하고, 해당 주민(집단)의 효율적인 참여, 협의 그리고 협상을 통해 강제철거로 부터 보호받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게 한다.
- (4) 강제철거를 당한 모든 주민과 공동체에 대하여 정부는 그들의 요구에 따라 원상회복, 보상, 혹은 적정하거나 충분한 대안적 거처(혹은敷地)를 마련해야 하며, 이는 이해관계를 지닌 주민 및 집단의 상호 만족스러운 협상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 (5) 유엔 사무총장은 이 결의안이 세계 모든 정부, 유엔 산하기관, 지역 및 범정부 기관, 민간단체, 커뮤니티 단체에 권유 시행하도록 한다.
- (6) 유엔 사무총장은 실제 강제철거에 관한 각국의 사례·분석보고를 취합 하며, 이를 국제법과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분석하며, 그 결과보고서를 제50차 인권위원회 회의에 제출하도록 한다.
- (7)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실현"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제50차 회의에서 작성하도록 결정하며, 강제철거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을 결의한다.

한편 주거권에 대한 국제협약초안(Draft International Convention on Housing Rights)⁵⁾에 따르면 첫째, 적절한 주택(adequate housing)은 인간의

5) UN Special Rapporteur on Housing Rights, August 1994. 참조.

자유, 존엄성, 평등 그리고 안전에 필수적임을 자각해야 한다. 둘째, 적절한 주택을 인권으로 인식하는 것은 국제인권협약에 따라 확인되며 이는 세계인권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n Human Rights) 및 기타 국제협약, 결의안 등에 포함되어 있다. 셋째, 모든 정부는 법적으로 '주거에 대한 권리(주거권)'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주거권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어느 한 국가 만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고 주거권을 위한 범국가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세계 여러 국가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대부분 각국의 NGO 그룹들이다. 인도의 경우 주거권을 위한 전국캠페인이 NGO들에 의해 전개되고 주거권을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법률안을 의회에 요구하였다. 그리고 필리핀에서는 1992년 '주택 및 도시개발법(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Act, R.A. 7279)'에서 주거의 권리를 채택하게 되었다. 그리고 벨기에 주거권을 민간단체들에 의해 헌법에 주거권을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국제적인 NGO로서 멕시코에 본부를 둔 HIC(Habitat International Coalition)은 주거권의 국제법적으로 보다 분명히 명문화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주거권에 대한 異見과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되기도 한다.⁶⁾ 첫째, 현재 세계의 약 10억 인구가 집이 없거나 부적합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해당 정부가 주거권에 대한 사항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다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많은 혼란을 야기킬 수 있다.

둘째, 이미 국제법 등에서 주거에 관한 권리(인권사항 등) 규정을 명시하고 있어 주거권을 또다시 국제적으로 정하는 것은 중복이며 적합치 않다. 셋째, 주거사정이 국가마다 상이하여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주거권의 적용은 실행상의 한계가 있다.

넷째, 주거권에 대한 국제협약은 HABITAT II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 HABITAT II는 주거권만을 다루는 유엔회의가 아니다.

다섯째, 주거권에 대한 국제협약이 결정된다 해도 이를 조사·확인·집행하기 위한 비용과 절차상의 문제점이 많다.

6) S. Leckie, op. cit., pp. 33-55.

3. 한국의 현실

1) 주거권 :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인가

한국에서 주거권은 존재하며 법적으로 보장된 것인가?

주거권의 법적인 근거는 헌법 제10,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하면 "행복을 추구할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헌법 제35조 3항에는 "국가는 주택개발정책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그리고 주택건설촉진법 제2조에는 "국가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 되어있다. 이러한 법적 규정들에 근거하면 주거권은 확보되어 있다는 해석을 내릴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어떤 법에서도 "주거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즉 헌법상의 규정들은 주거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기보다 그 내용이 매우 추상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예로 행복추구권이나 환경권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생각된다. 주택건설촉진법(법 제2조)에 명시된 것은 국가가 국민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계획·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는 적극적 주거권의 보장이라기보다 주택건설 및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적인 뒷받침을 위한 사항으로 해석된다.

한편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관계에 있어 임차인(세입자)의 권리보호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규정한 것이 임대차보호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임대차보호법은 자동갱신권에 대한 규정이 없다. 자동갱신권이란, "세입자가 임대료를 지불하고, 계속 같은 집에 살기를 원한다면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권리" 혹은 "세입자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경우 집주인은 퇴거를 명하지 못하도록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재개발지구나 일반 저소득층이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임대주택의 세입자들은 집주인의 횡포에 법적으로 대항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주거권이 보장되어 있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헌법과 여러 법률에 명시된 "국민의 주거안정"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은 형식적인 동시 매우 선언적 미사여

구에 불과하다.

우리 나라도 선진외국의 경우와 같이 富에 대한 평등한 분배를 요구하고 복지에 대한 권리까지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가 현대 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⁷⁾ 주거권은 소극적 권리라기 보다 적극적인 권리 개념이다. 주거권은 고유하고 신이 부여한 권리라기 보다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부여하고 정책과 제도에 의해 강제되는 권리이다. 그래서 주민 개인과 단체의 정치적·사회적 참여에 의해 성립되는 권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주거권의 확보를 위해서는 시민단체(NGO)와 주민단체(CBO)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2) 주거권의 침해 사례

우리나라는 주거권을 하나의 권리로 보장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거권을 침해하는 사례를 법적인 근거에서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유엔이 정한 「인간정주 벤쿠버 선언과 행동방침」, 「2000년 주거를 위한 지구전략」,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안(제 49차 회의)」 그리고 「제2차 세계주거회의(HABITAT II)의 목적과 내용」 등을 기준으로 주거권 침해 양상을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강제철거는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명백히 인권과 주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지난 1980년대 초반부터 실시된 합동재개발사업으로 인해 불량무허가 주택이 밀집한 불량촌(달동네, 산동네)의 저소득층 주민이 강제로 철거된 사례들이다. 80년대 합동재개발이 도입된 초반부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이 세입자들을 강제로 퇴거 시킨 것은 주거권을 침해하는 사례로 충분하다. 이후 세입자에 대한 이주비의 제공 등 일부 개선된 정책을 펴고 있지만 상당수의 재개발지구에서 철거과정의 폭력적 사태는 주거권의 침해 사례로 본다.⁸⁾

둘째,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임차가구의 자동갱신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7) 적극적인 권리를 이해하기 위해 “소극적인 권리” 개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소극적인 권리는 전통적으로 인정되어온 것으로 단순히 공격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에서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8) 1994년 4월 19일 서울시 하왕십리2-1지구 재개발지구에서 철거반의 폭력적 철거과정에서 수명이 폭행을 당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다(한국일보, 1994년 4월 25일자 참조).

있다. 일정 계약기간이 끝나면 임차가구는 주인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재계약하거나 쫓겨나가는 결과를 가져온다. 주인이 일방적으로 임대료(전세금 등)를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한도를 넘어 책정하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퇴거를 요구할 때 임차가구는 법적으로 대항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주거권이 침해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

셋째, 노숙자, 별집, 닭장집, 비닐하우스, 지하단칸방, 달동네 불량주택 등에 거주하는 절대주거빈곤층에 대한 국가의 주거대책이 없거나 있다해도 매우 제한적이다. 이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국가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전과 향상을 보장”해야 한다는 법정신에 위배되고 있다.

넷째, 주거빈곤층 그리고 정부로부터 주거권을 침해받는 혹은 최저한의 주거조건도 갖추지 못한 주민과 주택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즉 정부는 최적주거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거빈곤층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거빈곤층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힘들게 되어 있다. 이는 국가의 주거권확보에 대한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거빈곤층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생활최저선의 확보 즉 최적주거기준이하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이 주어진다.

IV. 주거권 확보와 세계주거회의를 위한 NGOs, CBOs의 역할

시장경제를 통한 주택공급과 배분은 생산력의 증대 및 질적 향상 등의 장점이 있으나, 소득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저소득 빈민들은 자력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라도 마련해 줄 책임이 있다.

그동안 정부는 주택의 공급물량확대에 치중한 결과 우선적으로 주거안정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여유 있는 중산층에게 보다 큰 집을 제공하는 결과를 냉고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전매차익을 노리는 가수요 투기꾼들이 공급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시장을 왜

곡시키고 있다. 세입자들은 과도한 임대료 상승과 비자발적인 잣은 이사로 생활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재개발지구의 세입자는 강제철거 등으로 주거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이에 우리 나라도 국민의 주거권의 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적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소극적이며 개혁의 의지가 부족한 실정이다. 인간다운 주거생활, 최저한의 주거수준의 확보를 위해서 그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진정한 공동체적 삶을 위해 NGO(비정부단체, 시민단체)와 CBO(주민단체, 지역사회주민조직체)는 연대하고, 노력하고, 행동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국제적으로 여러 국가들의 주거권확보와 인간정주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토의·결의하는 제2차 세계주거회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NGO와 CBO의 역할을 강조·제안하는 바이다.

- 1) 인권, 주거, 인간정주 등에 관련된 한국의 모든 NGO와 CBO는 제2차 세계주거회의(HABITAT II)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체계적으로 조직화한다(조직의 강화 및 정비).
- 2) 국민들이 세계주거회의가 무엇인가를 홍보하고 이 회의를 위한 한국 NGO와 CBO의 연대모임이 무엇을 준비하고 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를 알린다(국민적 캠페인, 홍보와 지지 확보).
- 3) 세계주거회의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밝히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신장, 주거권의 확보를 위해 대 정부 활동(제도개선, 법개정 운동 등)의 전개한다(대 정부활동).
- 4) 한국의 주거현실과 정부의 주거 및 인간정주에 대한 정책을 외국의 여러 나라와 비교 분석하며, 정보를 교환하며, 국제적으로 연대하는 모임에 참석하며, 세계주거회의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국제활동의 강화와 HABITAT II 활용)
- 5) 주거빈곤층에 속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을 위한 정주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정기적인 공청회, 학술대회, 포럼, 워샵, 캠페인을 개최하도록 한다(주민참여 확대 및 유도).

참고문헌

- 김영모, 「한국빈곤연구」,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1992.
- 국토개발연구원, 「주거기준설정에 관한 연구」, 1986.
- 국토개발연구원, 「도시빈곤층 대책에 관한 연구」, 1989.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주택정책 기본방향」, 1994.
- 류해웅, "주거생활의 향상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법제연구」, 제7호, 한국법제연구원, 1994, pp. 66-90
- 하성규, "서민주거안정과 주택소요", 한국사회정책학회지, 제1권, 1994.
- 하성규, 「주택정책론」, 박영사, 1995.
- 하성규, "도시서민 주거불안정의 구조적 요인과 그 대책", 지방자치 시대의 도시생활환경, 한국도시연구소 창립기념 심포지엄, 1994.
- 하성규, "주거빈곤실태와 복지증진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개원 3주년 기념심포지엄, 1995. 9
- 한국도시연구소, 「공공임대주택정책의 재평가와 발전방향」, 1995.
- Asian Coalition for Housing Rights, *Urban Poor Housing Rights in South Korea and Hong Kong*, Bangkok, 1991.
- Asian Coalition for Housing Rights, *Battle for Housing Rights in Korea*, Bangkok, 1989.
- Block, W., "Housing is not a Basic Human Rights", *Canadian Housing*, 6(1), 1989, pp.30-31.
- Castells, M., Goh, L., and Kwok, R. Y-W., *The Shek Kip Mei Syndrome: Economic Development and Public Housing in Hong Kong and Singapore*, London, Pion, 1990.

- Leckie, S. *Towards and International Convention on Housing Rights: Options at Habitat II*, Issue Paper No. 4, The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Washington, D. C. 1994.
- Leckie, S. "Housing Rights in the 1990s", *Cities*, 1991, pp. 33-38.
- United Nations Global Strategy for Shelter to the Year 2000(GSS)*, adopted by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3/181, 20 December 1988.
- U. N., *Toward a Housing Rights Strategy: Practical Contributions*, HS/C/15/INF.7, 1995.

◆ 부 록 ◆

HABITAT II 준비토론회(95. 05. 23) 자료모음

◆ HABITAT II 96이스탄불회의 의의와 준비

-도시정상회담(Sity Summit)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유재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 '96 세계주거회의(HABITAT II)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김영준(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

◆ 세계주거회의에 바람직한 참여를 위한 준비

☞ 박문수(ACHR 한국위원회 상임대표)

◆ 세계주거회의(HABITAT II) 준비와 참여의 필요성

☞ 하성규(한국도시연구소 소장)

HABITAT II '96 이스탄불회의의 의의와 준비

- 도시정상회담(City Summit)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유재현 / 경실련 사무총장

1. HABITAT II의 개최 배경

도시화과정을 관리하고 인간의 주거환경을 개선시킬 것을 목적으로 한 유엔회의가 1976년 카나다의 뱅쿠버에서 열린 이래 도시문제에 대한 국제간 협력이 활발해졌다. "HABITAT I"라고 불리우는 이 역사적인 회의의 결의를 추진하기 위해 유엔은 UNCHS (United Nations Centre for Human Settlements, 유엔인간정주센터)를 설립하고 그 본부를 케나의 나이로비에 설치했다.

유엔총회는 그로부터 20년이 되는 1996년 6월에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에서 제2차 유엔인간정주회의를 열기로 결정한 바 있는데 이것을 약칭으로 "HABITAT II"라고 부른다. 1992년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1972년 스톡홀름회의 이후 20년후에 개최된 것과 마찬가지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 HABITAT II 회의는 UNCED를 "세계정상회담 (World Summit)"라고 부르는 것과 대비하여 "도시정상회담 (City Summit)"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HABITAT I이 시작되었을 때 전례에 없는 도시인구증가와 도시문제의 악화로 인해 지구적 차원에서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전반적인 공감이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합의된 것은 저소득층 주거지원 및 보조, 물리적 사회적 기반시설구축을 위한 정부지원금의 확대였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 동안의 성과를 평가해보면 사회주의도 자본주의도 모든 시민에게 적합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중요한 것은 도시문제가 무엇인지 그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이며 이를 위해 새로운 국제적인 협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HABITAT II의 사무총장인 윌리 엔도우는 다음과 같이 그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HABITAT II는 단순한 또 하나의 회의가 아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현실에 대한 국제사회의 새로운 인식 - 어쩌면 새로운 각성 -이라고 보아도 된다. 즉 이제는 시간이 없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구하고 싶다면 우리사회가 그동안 가장 소홀히 해왔으나 아주 시급한 문제에 대해 오늘 그 해답을 구하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 문제란 우리의 일상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 - 즉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어디에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살아 남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성장과 번영의 상징이며 찬란한 미래에 대한 보장으로 여겨져 왔던 도시들은 이제 길바닥에 누워자는 사람들의 급격한 증가, 범죄와 질병의 만연, 공해의 증가와 환경의 파괴로 인해 더이상 "희망의 도시"가 아니고 "절망의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 HABITAT II는 이런 의미에서 인류생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토론의 장이라고 볼 수 있다.

2. HABITAT II의 목적과 구체적 목표

유엔총회의 결의에 의해 개최되는 도시정상회담은 광범위하게 정의하자면 "세계의 모든 도시 마을 지역사회를 건강하고 안전하고 공정하며 지속 가능한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내용을 세분화하면 첫째 도시화문제를 국제적 국내적 개발계획에서 우선순위에 놓을 것, 둘째 도시관리와 주택개발에 있어서 새로운 정책과 전략을 촉진시킬 것, 셋째 도시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 넷째 도시하부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투자의

필요와 기회를 강조할 것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도시문제를 지구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2000년경이 되면 세계인구의 반정도가 도시지역에 살게 될 것이고 농촌에 사는 또 다른 반은 생존을 위해 도시의 서비스와 기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또한 도시의 성장과 쇠퇴는 바로 한 국가의 생존과 번영에 직결되고 있으며 도시문제들은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영향력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바로 국가 전체의 문제인 동시에 인접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인 문제가 된다. 유엔총회는 도시정상회담의 구체적 목표를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정했다.

- 1) 도시와 마을이 다음과 같은 활동의 중심으로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지구적 그리고 국가적 차원의 의식을 고양한다: 고용, 투자와 교역, 생산과 소비, 문화와 교육, 농촌인구와 농산물에 대한 시장과 서비스중심지, 시민정신과 사회조화.
- 2) 주거와 도시개발을 위해 새롭고 보다 효과적인 투자를 확대하여 시민들의 거주환경을 개선한다.
- 3) 국가적 지역적 우선순위를 근거로 하여 국가적 행동계획을 구상하고 채택하며 실천시킨다.
- 4) 1996-2000까지 제1단계 국가적 약속을 포함한 국가단위의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지구행동계획을 채택하고 실천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하며 모든 분야의 사람들 그리고 지방정부로부터 유엔등의 국제기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요행위 주체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도록 제반조치가 강구되어야 하며 새로운 해결을 위한 기술 정보 아이디어들을 최대로 활용하고 탁월한 실례들을 기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 도시의 대표들이 모이는 도시정상회담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장이 될 것이다.

3. 도시정상회담의 진행계획

1996년 6월 3일부터 14일까지 이스탄불에서 열리게 되는 도시정상회담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시문제에 관한 지구회담 (Global Conference) 세계도시의회 (World Assembly of Cities)를 비롯하여 시청각전시회, 세계주택 및 정주지 EXPO, 주요테마별 토론회 등이 계획되어 있고 각 주체별로 협력포럼 (Partners Forum)이 진행될 예정이다.

도시정상회담의 준비위원회는 이 회담에 참석하게 될 주체들을 다음의 8개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국가별 보고서를 작성할 때 각각의 주체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1) 모든 정부단위
- 2) 시장 의회의원 및 각종 협의회
- 3) 시민지도자들 원로 정치인들
- 4) 민간협회, 기업협회 및 비영리협회
- 5) 학계 및 과학계
- 6) 인간정주지 관련 전문가들
- 7) 지역사회 지도자들
- 8) 비정부단체 (NGO)와 주민단체 (CBO) 대표들

이중에서 특히 각국정부는 고위급인사들로 구성된 국가위원회 (National Committee)를 가능한 한 조속히 설치해야 하며 여러 분야의 의견을 종합하여 향후 2년간의 작업계획을 수립할 것을 유엔총회가 권고한 바 있다. 국가위원회는 2년간의 작업을 통해 “1996-2000 행동계획을 작성해야 하는데 그 진행결과를 주기적으로 HABITAT II 사무국에 보고해야 한다. 각급 국제기관과 지역협회 그리고 NGO들은 국가위원회에 참여하여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도시정상회담의 사무국은 2년간의 준비과정을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1) 1994년 4월: 제1차 준비회의 (PrepCom I) 스위스의 제네바
지구행동계획의 초안 작성을 위한 원칙과 방향 제시
- 2) 1994년 12월: 국가보고서 진행사항을 사무국에 보고
- 3) 1995년 4월: 제2차 준비회의 (PrepCom II) 케냐의 나이로비
지구행동계획의 초안 검토
각국별 진행보고서의 검토, 도시정상회담 추진과정 점검
- 4) 1995년 12월: 각국별 국가위원회 최종보고서 사무국에 제출
- 5) 1996년 2월: 제3차 준비회의 (PrepCom III) 미국의 뉴욕
- 6) 1996년 6월: HABITAT II 대회 개최, 터키의 이스탄불
도시정상회담 및 도시 엑스포

4. 국가행동계획의 기본내용

도시정상회담에서 채택될 지구행동계획은 기본적으로 각국별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작성될 것이기 때문에 회담의 성공은 각국의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에 달려 있다. 이 보고서는 주택과 도시에 관한 각종 지표를 근거로 하여 현재의 경향과 주요 과제들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것을 제1차적인 목표로 하게 되는데 여기서 다루게 될 기본 정책과 전략의 효율성 검토 과제들은 대략 다음과 같다.

- 1) 주택 및 도시개발에 관한 재정지원 상태
- 2) 지역분산화정책과 효율적 도시관리 (도시행정)
- 3) 빈곤퇴치 및 고용촉진
- 4) 여성 및 사회적지위가 낮은 계층을 위한 대책의 고려
- 5) 환경관리계획
- 6) 재해피해의 완화 및 재건계획

각국정부는 이에 관련된 좋은 사례들을 발굴하여 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1996년부터 시행될 국가 5개년계획을 구체적으로 행동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국가행동계획은 모든 국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행동지침들을 통해 실천되어야 한다.

- 1) 참여과정과 자문과정을 촉진하고 지원함
- 2) 지역단위 행동계획 수립의 지원함
- 3) 창의적인 재정계획을 마련하고 적용함
- 4) 각 기관의 능력을 배양하고 관리기술을 향상시킴
- 5) 도시 및 지역계획과정을 강화함
- 6) 공개적이고 공정한 토지관리 대책을 지원함
- 7) 적절한 기술을 개발함
- 8) 정보과학과 네트워크의 적용

국가행동계획은 이상의 방법들을 통해 작성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예산계획, 시간계획, 활동계획, 우선순위계획 그리고 평가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국가행동계획이 제대로 작성되게 하기 위해 도시정상회담 사무국은 기본적인 지침서를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하고 1996년 이스탄불 대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준비일정을 점검하고 시간통제를 해나갈 것이다.

특히 자체적 능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이 꼭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2년간의 준비프로그램을 빨리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국제기관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6. 제1차준비위원회 (PrepCom I)의 주요 논의사항

1994년 4월 11일부터 22일까지 제네바에서 HABITAT II 제1차준비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우선 그동안의 의장국이었던 카나다가 의장직을 사임함에 따라 페란드의 마르티 류자넨씨를 의장으로 선임했다. 류자넨의장은 취임사에서 HABITAT II가 1992년의 유엔환경개발회의의 중요한 후속조치라고 전제하고, 물문제 위생문제 교통문제 도시화문제 무주택문제 그리고 제반 사회문제들은 일상적으로 수백만 시민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이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말했다.

1992년 리우세계정상회담에서 시작하여 폭넓게 확산된 지구적 협력정신을 바탕으로 국제사회는 이미 지속가능한 개발 (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새로운 파라다임을 공동의 과제로 정한 바 있는데, 류자넨의장은 1996년의 도시정상회담이 국제화 지방화의 시대에 이러한 지속가능한 개발이 실제로 성취가능한 일인가를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96개국의 대표들이 참석한 이 회의에는 UNDP UNEP ESCAP 등의 국제기구들이 참석했으며 다음의 주요한 국제적인 NGO들도 참석했다.

Habitat International Coalition

International Academy of Architecture

International Architects Designers for Social Responsibility

International Council of Women

International Union of Local Authorities

International Youth and Student Movement for the United Nations

Inter-Parliamentary Union

1992년 12월 22일 유엔총회 결의문 47/180에서 위임된 사항을 바탕으로 제1차준비위원회는 참가국들에게 제시할 구체적인 작업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했다.

1) 각국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그리고 NGO 및 CBO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하에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포함한 인간정주지문제를 다름에 있어

환경적인 고려를 충분히 하고 능력배양전략을 기초로 하여 국가행동계획을 계획하고 채택하고 실천해야 한다.

2) 세계적으로 공동사용이 가능한 일정하고 항시적인 최소한의 도시지표들을 선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주거상황과 도시화과정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 여러 기관들의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전략이 필요한데 제1차준비위원회는 그 전략을 다음과 같이 2가지로 제시했다.

(a) 실행프로그램의 채택

1) 실행프로그램은 도시 및 농촌의 환경과 도시화과정에 관련된 문제들을 제기하고 국가행동계획을 진행하는 과정을 시작하고 지도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2) 이 과정은 국가행동계획에 있어서 공공과 민간부문의 역할을 규정하고 NGO들과 민간부문의 대표자들 (건설업계, 중개인, 개발업자, 감정평가사, 관리자 등)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3) 이 과정은 또한 전국 또는 지역단위의 인간정주지운동 단체들의 연합체의 구성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국가행동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모든 사회단체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한다.

(b) 기관의 지원과 능력배양계획

1) 준비과정은 주거의 양적문제, 질적문제, 사용가능성문제, 접근성문제 그리고 부담능력의 문제 등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분석해야 하며 최소한으로 선정된 지표들을 통해 주거상황을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은 또한 국가적인 규모에서 예상되는 미래의 도시화과정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또한 뱅쿠버선언, 2000년 지구주거전략

(Global Strategy for Shelter to the Year 2000), 의제21 (Agenda 21) 등 지구적 차원에서 채택된 제반문서의 정신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

2) 기술적 지원은 이 과정에서 모아진 정보를 국가적 지역적 세계적 차원에서 공통의 주거 정주지 도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술적 지원의 내용은 각종지표의 구조와 주요 내용에 관한 것, 실행과 운용방법에 대한 기본요소, 이를 통한 정책자료와 정보의 개발 방법 등을 포함한다.

7. 나이로비 제2차 준비회의의 주요 논의사항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5일까지 캐나다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2차준비회의에서 가장 첨예한 토론의 대상이 되었던 과제는 주거를 하나의 권리(Right)로 볼것인가 아니면 단순한 소요(또는 필요, Need)로 볼 것인가였다.

매 2년마다 열리는 유엔정주위원회 (UN Commission on Human Settlements)는 이번의 하비타트 제2차준비회의와 같은 시기에 열렸는데 57개의 회원국들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주거권(Housing Right)이라고 하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격론을 벌이다가 결국 결정을 보류하고 다음회의로 의제를 넘겼다.

미국대표단은 사무국이 준비한 "주거권전략을 위해, Towards A Housing Right Strategy"라는 문서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주거를 절대로 하나의 권리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멕시코 등 몇나라에 이에 동조했다. 이에 반발한 일부 개발도상국의 대표들은 주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했다.

하비타트센터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게 낳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주거권에 관한 논쟁 이외의 문서들은 대체로 합의에 도달하였는데 이 회의에서 채택된 문서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도시 및 주택 지표 (Indicators)
200년 지구주거전략 실행계획 (1996-1997)

지구행동전략 (Global Plan of Action)

이스탄불회의 실행계획
도시화세계속에서의 지속가능한 인간정주지 전략
나이로비회의에서는 또한 많은 비공식회의회 민간단체의 토론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주요한 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다.

세계주택금융회의
도시폭력에 관한 회의

적절한 주거권에 관한 회의

지방자치정부 회의
도시관리회의

지속가능도시에 관한 회의

아동과 주거회의

청년과 주거회의

가치관에 관한 회의

2차준비회의에 대응하는 NGO회의

인간정주지에 관한 퍼스널컴퓨터에 관한 설명회

북경대회와 이스탄불대회를 준비하는 여성NGO회의

하비타트준비를 위한 세계 국회의원회의

지방정부의 지속가능지표에 관한 회의

8. HABITAT II를 대비하기 위한 우리의 자세

1976년에 처음 시작되었던 HABITAT I부터 HABITAT II까지 일관되어 있는 기본적인 전제는 "적절한 주거는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사상이다. 국제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경제사회문화권에 관한 국제장전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등에 이미 규정된대로 주거권은 인간기본권이다. 따라서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는 인간에게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며, 건강하고 안전하며 지속가

능한 인간정주지를 만드는 것은 인간생존의 절대불가결한 요소다.

이런 의미에서 주택 및 도시문제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을 다시 한번 불러 일으키게 될 이번 HABITAT II 회의에 적극적인 준비를 갖추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특히 이번 회의는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 이래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환경문제, 그중에서도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명제를 중심으로 도시문제를 다시 조명하게 되는 역사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생산성을 높혀 경제문제를 해결하면서 빈곤을 퇴치하고 분배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인류의 장래는 보장할 수 없다. UNCED에서 채택된 의제21의 정신을 바탕으로 인간의 주거 및 정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이 다.

이제 도시문제는 정부의 역할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 사회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공동의 지혜를 모으고 문제해결을 위해 협조해야만 한다. 이제 우리는 위기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입장에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제 별로 많지 않다. HABITAT II의 개최를 정한 유엔총회석상에서 부트로스-갈리 사무총장이 연설 첫머리에서 한 다음의 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깊이 음미할 필요가 있다.

“인간정주지의 문제는 시급하다. 더이상 지체해서는 안된다. 문제를 정리하고 준비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 지금은 실질적인 문제를 다룰 시간이다.”

35

‘96 세계주거회의(HABITAT II)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김영준(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

첫째 ‘96 세계주거회의 한국민간위원회 구성은 한국민간단체들의 명실상부한 연대기구로 결성되어야 한다. 이 연대기구는 주거권운동, 인권운동, 환경운동 등을 중심으로 CBO, NGO, 그리고 지역사회 현장 운동가들이 총 망라된 민간단체가 되도록 개방되고, 민주적 합의를 얻어내야 한다.

이 연대기구는 지난 ‘95 사회발전 민간대회 참가를 위해 결성한 인간사회발전 한국포럼의 경험을 나누고, 보다 발전된 한국민간위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세계주거회의참가를 넘어 국내의 도시사회발전을 촉진하고 지구촌 빈곤문제를 타 민족단체들과 공동 대처 해 나갈 수 있는 연대 기구가 되어야 한다.

이 연대기구는 각 단위 운동차이를 연대활동을 통해 극복해 나가야 하며 한국정부가, 한국재계가 일국의 편협한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도록 국제적 갈등, 국내적 갈등을 적극적으로 중재, 조정하는 한국민간단체가 되도록 시민적 힘을 모아 내는 힘있는 연대기구가 되어야 한다.

둘째, 주거운동은 범시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중요한 한 단위가 되어야 한다.

건강한 도시사회발전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국민주거권을 위한 개혁과제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

- 1) 주택에 대한 것--주거권 일반, 강제철거금지, 재개발 이주대책, 공공임대주택, 임차권보호, 최저주거기준과 적정주거기준, 서민주택을 위한 자원과 기금 확보 등
 - 2) 토지에 대한 것--국공유지 확대와 활용방안, 토지 공개념의 확대도입, 개발이익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이용 등
 - 3) 생활환경에 대한 것--미래와 환경을 생각하는 개발, 주민자치 보장 등
- 국민주거권은 인간 기본권으로 선언 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택과 도시문제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을 높이는 국민주거권 운동이 되도록 준비해야 한다.
- 세계 정부, 재계 도시개발정책 주거정책에 대한 격차를 좁혀내는 활동도 활발하게 준비해야 한다.
- 네제 이스탄불 회의에 참여하는 정부, 재계, 민간단체등 참가자들의 한국 역할을 통해 통일성있게 [지구촌 주거권을 선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세계주거회의에 바람직한 참가를 위한 준비

박문수
(Asian Coalition for Housing Rights(ACHR) 한국위원회 상임대표)

이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많고 우리 모두 다 같이 망하게 하는 행위도 많습니다. 갈수록 무기를 더 많이 생산하고 큰 이윤을 얻으면서 이 무기를 수출하는 여러 국가들의 행위가 우리 모두 다 망하게 하는 행위 중에 하나라고 하면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유엔에서는 이제 약 5년동안 <지속가능한 인간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 최근에 여러 세계회의를 통해서 유엔은 인간 중심이며 다음 세대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은 대안적 개발을 추진하면서 이런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세계질서를 추구해왔습니다. 1994년 카이로에서 인구와 개발문제를, 1995년 코펜하겐에서 사회개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 회담들의 선언문은 말뿐인지도 모릅니다. 합의한 내용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에 관한 강제성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책이뭉치 물어볼 날짜에 관한 합의도 없는 셈입니다. 그래도 이 회담들에는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 모두 다 망하게 하는 행위에 관한 고발이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대한 비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개발에 관한 유엔의 평가는 대개 좋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의 교육수준을 향상시킨 우리의 노력은 개발의 이상적인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행위와 말도 안 되는 소리 있습니다. 우리으

재개발에서는 세계의 제일 잔인한 강제철거가 있고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국민총생산을 향상시킨 나라가 서민의 주택난은 30년동안 그냥 방임해 오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주택난을 해결할 수 없다' 하는 말도 안 외는 소리가 있습니다.

소리가 있습니다.
이스탄불의 세계회의를 준비하고 있는 비정부기관들은 우리 도시와 우리 주택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리고 유엔에서 추진하는 지속가능한 인간개발을 요구하기 위해서 널리 연대를 맺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이 기회에 서민을 위한 도시, 모든 국민을 위한 주택정책과 같은 가치를 지구촌에서 널리 요구하는 운동에 참여하므로 우리 모두 다 망하게 하는 지속 불가능한 잘못된 개발을 고발하고 항의해야 하겠습니다.

‘96 세계 주거 회의(HABITAT II) 준비와 참여의 필요성

하성규(중앙대 교수)

1. 세계주거회의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민간단체가 UN 산하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주거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간단체(NGO)와 주민조직체(CBO)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2. 국내 민간단체가 연대하여 주거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정보교환, 자료분석, 발표문의 공동작성 노력은 우리나라의 민간단체의 역량을 세계에 알리는 길이며 이는 곧 세계화전략에 부응하는 길이다.

3. 세계주거회의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은 주장할 것이며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 1) 한국의 주거빈곤상태를 외국 여러 국가와 비교하고 외국의 주거문제해결노력에 대한 정보를 구독한다.

- 2) 한국은 주거권을 보장받고 있는가? 주거권이 침해되고 있다면 이를 예방,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를 논의하고 이를 위한 국제적 연대망을 형성 공동으로 대처하도록 한다.

전세계적인 행동계획

서문

1. 인간은 계속되고 있는 개발의 중심에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건강하고 생산적인 생활을 위한 주거의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또한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가치와 조화를 이루어어야 합니다. 정의와 평화, 그리고 사랑과 연민을 나타내는 이러한 가치없이는, 인간은 다른 이들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2. 인간거주회의(Habitat) 경과 : 인간거주회의는 1976년 뱅쿠버에서 열렸습니다. 농어촌의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동안에 조차 세계의 도시인구는 두 배나 증가되었습니다. 10억 이상의 인구가 기본적인 주거공간조차 없는 극빈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1976년 이후로도 빈민들의 주거상태는 커다란 변화가 없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지역적으로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환경이 악화되어 왔습니다.

3. 인간 거주회의 2차 회의 (Habitat II)는 일련의 다른 유엔 회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22인간거주회의 2차회의 (Habitat II)의 주요한 기능은 세계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한결음 더 가깝게 만들어줄 이 과정을 지속시키는 것입니다.

4. Habitat II는 “모두를 위한 적당한 주거” 와 “도시화되어 가는 세계에서의 지속적인 인간주거” 라는 아주 중요한 두가지의 주제를 다룹니다. 모든 인류를 위한 적당한 주거상태를 달성하는 것은 사회 경제적 안정의 중

3) 도시의 빈곤층에 대한 민간단체 차원의 자구적 노력은 무엇이며 국가를 상대로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가를 논의 할 기회를 마련한다.

4) 정부의 세계주거회의에 제출할 NATIONAL REPORT에 민간단체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한다.

5) 도시문제, 주거문제 등의 해결방안모색(정책결정)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의견도 수렴될 수 있는 힘을 배양한다.

6) 이 기회에 인간정주 및 주택, 빈곤 등 다양한 도시문제에 대한 민간단체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향후 이 분야 민간단체들의 운동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진다.

심 부분이며, 또한 지속적인 인류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인류와 인류의 주거 사이의 증가하고 있는 세밀한 관계로 인하여 도시화되어 가고 있는 세계에 있어서 지속적인 인간 주거에 대한 의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상황은 긴박해져 가고 있고 새로운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5. 현 세계의 상황은 희망의 전망과 우려의 요소들에 의해 나타내어질 수 있습니다. 냉전의 종식은 국제적인 협력의 새로운 방식을 위한 기회를 제공했고, 경제의 변화 상태에 있는 나라에 있어서 주요한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많은 나라들은 심각한 경제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려해 왔던 것처럼, 빈민, 권리를 빼앗긴 사람들, 장애인들, 그리고 약자 그룹에 있는 사람들,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은 가장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각지에서 인간 주거에 관련된 문제들의 주요한 원인이 만연되어 있는 불공정한 무역 조건하에서의 경제적 제도, 국제적인 외채, 사회적으로 불공정한 구조적 조정 제도들, 그리고 이윤의 강조와 성장지상주의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6. 열악한 주거와 무주택 문제는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커져가고 있는 어려움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약자 그룹, 특히나 여성과 어린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고, 인류 발전과 존엄한 생활 조건을 위해 필요한 개인 생활과 주거공간 없이 수백만의 사람들을 떠나게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라고 해서 그러한 문제들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일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번영의 팽창이 나머지 사람들의 절대빈곤의 확산과 더불어 일어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과 여성, 그리고 남성이 평화롭게 인간 존엄성을 가진 채 살 아갈 권리가 있다는 원칙으로부터 출발한다면 이 음울한 상황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며, 반드시 개선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7. (산업화된 세계의 도시중심은 우리시대의 어느 다른 요소보다도 지역적

이고 세계적인 환경에 대하여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선진국이건 후진국이든간에 모든 도시들은 지속적인 환경악화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밀집지들은 지구의 환경을 위협했던 결과들에 불균형하게 공헌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환경에 대한 국지적인 관심은 개인적인 책임성 인식의 결여에 의하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첨부자료 참고)

8. (교통혼잡, 기본적인 서비스 시설의 부족, 거주공간의 부족, 열악해지고 있는 기간시설, 그리고 과로한 업무와 자금 부족상태의 지방정부들은 공통된 문제들입니다. 생활조건을 열악하게 하고 있는 현재의 흐름들의 원인은 도시주거의 비지속성, 그리고 생산방식, 소비와 변동성들입니다. 이러한 생활조건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만 합니다.)

9. 도시지역들은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발전을 위한 도구로서, 그리고 산물로서 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걸쳐서, 증가하고 있는 도시인구 부분에 대한 사회적 배척과 경시, 그리고 도시들이 열악해지고, 비조직화되어 가는 것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잘못된 관리와 자원들의 결여, 그리고 변화하는 세계에서 진보적인 사회적, 경제적 흐름을 받아들이는데 있어서의 실패에 의해 나타나는 징후들입니다. 많은 도시들은 더 이상 생산, 상업 그리고 고용을 위한 효율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나, 향상된 의사소통과 증가된 무역 그리고 자본의 흐름들, 기술적인 발전은 특히나 개발 도상국에 있는 도시들에게 있어서는 세계경제의 일원이 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도시문제들이 풀리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안정, 복지 그리고 발전의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10.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국제적인 이주는 세계의 많은 나라를 계속적으로 우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몇 나라들은 이주민을 위한 목적지이며, 동시에 이주민들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세계화는 또한 여성과 남성의 국제적인 변동과도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백만의 사람

들이 자신의 나라 밖에서 살고 또한 일하고 있습니다. 주거와 교육, 고용 그리고 국적의 포기없는 사회적 통합에 대한 요구들은 그 나라안에서의 충분한 관심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11. 인간 거주상태는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자연적, 인재적 그리고 다른 재난들에 대하여 더욱더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도시 수준을 넘어서는 예방적이며, 사전예방적인 조치들이 요구되어 집니다.

12. 도시와 농촌의 동시적인 발전은 모든 나라에 있어 중요합니다. 농촌 경제에 있어서 고용기회의 확대는 도시화에 대한 강한 압력의 요소가 되고 있는 농촌인구 성장을 따라잡지 못해 왔습니다. 도시와 농촌간의 관계는 도시들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아주 가까이에 있는 농촌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고 동떨어져 있는 지역에서도 지속적인 주거환경 발전을 가능하게 할 새로운 방법으로 모색되어져야 합니다. 환경적인 고려를 함과 동시에 농촌의 가난을 극복하는 것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13. 인간주거에 대한 효율적이고 민주적이며, 투명성이 있고, 책임감 있는 경영은 모든 사람들의 열망과 요구에 부응하고 잘못된 흐름을 바로잡기 위한 선제조건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정부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하며, 또한 강화되어야만 합니다. 가장 지방적인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결정은 그 지방주민들의 관심과 이익을 가장 잘 반영할 것입니다. 법적인 힘을 가진 구조적 요소의 관리와 이익을 가장 잘 반영할 것입니다. 그러한 요소들이 사회전반적인 책임성을 지탱하기 위해 널리 보급되어야만 하며, 그러한 요소들이 사회전반적인 책임성을 지탱할 수 있는 참여과정에서의 동반자가 되는 개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 조직의 노력을 보충해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 의한 정확하고, 유용하며, 시기적절한 정보에의 접근은 개인으로서, 그리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여성과 남성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들을 창조할 것입니다. 또한 이것들은 그들의 권리와 책임성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들의 능력을 효율적으로 그들의 삶과 근로조건을 공정하게 향상시킬수 있는 모든 행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14. 각 나라들은 그 나라에서의 여성의 지위에 의하여 국가 발전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통치는 개인, 즉 여성과 남성이 결정할 권리의 보장하는 것에 의해 시작됩니다. 남성을 위한 권리의 보장뿐만이 아니라 여성을 위한 권리의 보장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한 극빈자를 위한 신용과 보조에의 평등한 접근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남성에게 뿐만이 아니라 여성을 위한 정보, 교육 그리고 직업기회에의 접근도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집단적인 턱아소, 노인을 위한 시설, 그리고 모든 이들을 위한 안전하고, 알맞으며, 시기적절한 교통시설도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여성과 남성의 역할과 요구에 대한 사려깊은 사고와 함께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작고 큰 마을과 도시의 구성에 있어서 각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고, 투표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5. 서문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인간 주거를 위한 사회적인 문제들, 그리고 기회와 전망에 대한 설명은 이론적 근거와 이 회의의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공할 것입니다. 정부와 실업계, 그리고 자원단체 등에서 온 각 계각층의 사람들은 변화를 위한 협력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습니다. 몇가지의 의제들은 전세계적이고, 또는 지역적인 문제로써 언급되었습니다. 인간주거 부문에 있어서 무행동(무행정)과 잘못 인도된 행동(행정)의 위험들 또한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방법으로 개선을 위한 기회의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의논되어졌습니다. 중요한 국내적인 그리고 국제적인 행동에 대한 원칙과 목적, 그리고 공약들에 있어서도 의견의 일치가 있었습니다.

16. 이러한 원칙들과 목표 그리고 인간주거 2차회의에서 채택된 전세계적인 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인간주거의 질을 상당한 폭으로 개선하는데 있으며, 또한 특별히 개발도상국의 국민들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도시와 농촌 지역에 살고있는 빈민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근로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있습니다.

HABITAT II 원칙의 초안과 전세계적인 행동계획

회의에 대한 사무총장의 보고

요약

1. 결의안 47/180에서 국제연합총회는 인간주거회의가 2000년에서 202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국내적인 또는 국제적인 노력들을 지도하기에 적당한 일반적인 원칙과 노력, 그리고 전세계적 행동계획의 구성에 대하여 객관적인 채택을 해야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현재의 보고서는 세계적 행동계획과 원칙과 노력에 대한 초안입니다.

2. 회의의 실제적인 첫번째 회기에서 준비위원회가 결정한 것처럼, 원칙과 노력들은 전세계적 행동계획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준비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응답으로서, 현재의 초안은 '세계와 지역, 그리고 국가적 수준 가운데에서 두 지역사이의 의사소통을 원동력으로하여 구성되어졌습니다.' 첫번째, 전세계적 행동계획을 위한 구조적인 토대는 유엔총회, 준비위원회, 그리고 인간주거회의로부터 조직의 실제적이고 절차적인 명령들을 개발했습니다. 두번째로, 인간주거회의의 전문가들은 가이드라인을 구성하는 상호연관 과정에 참가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사무국이 세계적 행동계획의 요소들을 단일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세째로, 세계각지의 약 300여명이 넘는 전문가들과 정치적 지도자, 그리고 기관의 대표로 구성된 인간주거회의 조언자모임은 계획 가이드라인에 대한 검토와 논평을 맡도록 요청되었습니다. 조언자모임에서 다시 검토되어 돌아온 내용들은 가이드라인의 연속판으로 통합되어졌습니다.

목차

문단

행동요약	1-9
I. 서문	1-10
II. 주요 문제	11-23
III. 원칙	24-29
IV. 전략	30-33
V. 공약	34-44

행동요약

1. 목적: 세계적 행동계획은 이 계획에 의하여 정부와 주요그룹들이 지속적이고 균등한 인간거주를 창조하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에 전심전력하도록 하기 위한 도구이며, 또한 국제사회가 정부와 주요그룹들의 지지속에서 프로그램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는 도구입니다.

2. 주요 문제(논쟁거리):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도시화는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커다란 사회적, 경제적 변화입니다. 2000년에 이르면, 지구상의 반이상의 인구가 도시의 환경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거주에서의 근본적인 변화는 전통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제도들의 방법과 능력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문제들을 인식하는지, 어떻게 우선순위를 결정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원을 생산하고, 배치, 배분할 것인지가 바로 그러한 의문들입니다. 세계의 도시들과 작은 마을들이 직면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문제들은 도시화의 과정에 대응하고, 도시화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실패함으로써 생겨난 결과들입니다. 정부와 다른 기관들이 더 요구에 민감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은 세계적 행동계획의 전제입니다. 또한 지속적이고 균등한 인간거주를 창조하는데 있

어서 효과적이어야 하며, 도시화되어가는 세계에서 전세계적으로 적용성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3. 새로운 전략: 세계적인 행동계획은 참여와 지속성, 균등이라는 세가지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가지의 원칙은 사람들이 그들의 정부와 함께 문제들을 인식하고, 목적과 목표를 세우며, 자원을 움직이고 결과를 평가하는 전략을 가능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안정적이고, 균등한 인간거주를 창조하는 것을 돋는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개인과 조직, 그리고 단체들에게 권한과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이 전략의 실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정부가 그들 혼자서 커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점차적으로 깨닫고 있기 때문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모든 시민과 주요 활동가 그룹들이 동반자로서 도시화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것은 또한 모든 사람들과 그들 자신의 활동 요구들에 대한 민감성과 그들 자신의 능력과 방법들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부와 정부지도자, 그리고 관리자들에게 초청을 확대시킵니다. 이러한 정부가 처음으로 정부의 문제에 대한 지식과, 모든 시민과 조직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정부의 의지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입니다. 오직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참여되어지고, 정부와 다른 기관들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발휘되는 때만이 상대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국제사회의 자원들이 가장 다루기 힘든 문제들에 잘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목표: 세계적 행동계획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a) 규칙적이고 광범위한 토론과정을 통하여 인간거주의 개발에서 모든 여성과 남성들의 균등한 참여를 증가시키는 것.
- (b) 개선된 거주환경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향해 일하는 과정에서 개인과 주요그룹들 사이에서 더 효과적인 동반자적 관계를 만드는 것.
- (c) 사회적 요구와 필요에 대한 주요그룹과 정부의 대응력을 높이는 것.
- (d) 공적, 사적부문의 지도자들과 관리자들에게 공공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

(e) 각계각층에 있는 정부와 비정부조직들에서 지도력, 관리, 그리고 활동력을 향상시키는 것.

(f) 의사결정과 자원의 배분에 있어서 책임성, 공개성, 그리고 투명성을 제도화하는 것.

(g) 정부의 보호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h) 비인간적인 상태들을 개선하는 정부의 능력을 강화하는 것.

(i) 인간거주에 있어서의 개선을 도와주기 위하여 적당하고, 지속적인 금융자원들을 만드는 것.

(j) 모든 층에 있어서 인간자원, 기술자원, 금융자원들의 이동과 사용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을 제거하는 것.

(k) 전세계적인 탈문맹과 지속적인 일반교육을 달성하는 것.

(l) 도시화 과정에서 정확하고, 관련있는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m) 권한을 부여하는 의식을 구체화하는 정부정책들과 프로그램의 채택을 통한 도시화 과정에 있어서 개입의 지속성과 조화를 보장하는 것.

5. 노력: 전세계적 행동계획은 각계각층의 정부, 비정부조직, 지역사회조직, 교수진, 회사와 기업, 학술연구기관, 언론계, 재단, 그리고 국제조직들이 그들 자신의 방법과 적당한 수준에서 전략적인 목적의 공통적인 부분을 위하여 전심전력하도록 돕습니다.

6.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량을 만드는 것은 세계적 행동계획을 위한 사업의 첫번째 순서가 되어야 합니다. 6장에서 우리는 많은 실제적인 문제지역들(예를 들면, 거주, 환경적인 사회적 기반시설, 가난의 감소, 도시관리, 재난완화)에 있어서 능력을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적인 그리고 국가하부적인 수준에서 채택된 프로그램들은 문제해결에 대한 동반자적인 접근에 있어서 모든 주요그룹들을 통합하는, 부문 교차적이고, 다양한 수준이 될 것입니다.

(준비위원회를 위한 설명)
6장에서 제시된 실재적인 프로그램은 1996년 초에 있는 준비위원회의 실재적인 3번째 회의까지 지속된 발전과정을 통하여 정보가 채워지고, 정성들여 만들어 질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른 것들 가운데서 네가지의 주요한 검토, 다양한 세계적 워크샵과 세미나, 국제적인 기관의 프로그램들과 선언들, 그리고 국가적인 준비위원회등을 포함합니다. 의제 21, 인간과 개발에 대한 국제회의, 사회개발에 대한 회담, 그리고 다른 국제연합 회의들의 결과들도 또한 고려되어져야만 합니다.

7. 지원 프로그램: 7장에 있는 세계적 행동강령은 가장 문제가 있는 지역에 있어서 국제적인, 또는 국가하부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일련의 국제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 다른 활동 가운데에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지원합니다. 동반자관계의 준비과정과 구성, 지도와 관리를 위한 훈련, 농촌과 도시의 관계와 같은 주요한 문제들에 대한 연구, 적당한 방법들과 기술의 이전을 위한 과정, 주요그룹들 가운데 망을 구성하는 것과 정보의 교환을 위한 국제적인 데이터베이스와 의사소통 고리를 만드는 것, 그리고 도시화 정책과 관련있는 실재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세계적 행동계획에 있어서 지원의 첫번째 목표이며, 그리고 다른 것들 가운데서 최고의 활동의 인식과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또한 경험적인 지표들의 개발과 적용, 그리고 도시의 상태와 흐름을 감독할 세계적인 도시 연구소의 설립, 국가적 행동계획의 구성을 있어서 목표된 기술적인 지원들의 공급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8. 합의: 결국, 세계적 행동계획은 이 계획의 구체적인 부분들을 수행하기 위한 일련의 합의안들을 포함할 것입니다. 이러한 합의는 다양한 주요 활동 가들 사이에서 협의되어질 것이고, 특별한 동반자적 관계를 만드는 것을 통하여 조치를 취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9. 결론: 전반적으로, 세계적 행동계획은 정부와 주요그룹들이 도시화로서

알려진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실행하는 방법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입니다. 정부와 주요그룹 사이의 동반자관계를 지원하는 것에 의해, 모든 여성과 남성들을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고무시키는 것에 의해, 효과적인 자원의 스펙트럼은 전통적으로 이용이 가능했던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것입니다. 가장 가족주의적인 이데올로기와 일치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전략은 많은 복잡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에 있어서의 이성적인 접근을 설명합니다. 거의 세계적인 적응성을 갖기 때문에, 권한을 부여하는 전략은 협력활동을 통하여 의제 21과 다른 국제연합 프로그램의 목표를 수행할 효과적인 방법을 약속합니다.

I. 서문

“인간은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관심사항의 중심에 있다. 그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건강하고 생산적인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환경과 개발에 대한 리우선언을 통하여 원칙I은 1994년 4월에 제네바에서 개최된 첫번째 실제적인 회기에서, 인간주거회의 준비위원회에 의하여 하비타트II를 위한 세계적 행동계획에서 전반적인 원칙으로써 권고되었습니다.

“사회적 진보와 경제적 성장의 중요한 투입요소로서 인간주거의 문제들과 잠재성에 대한 세계적인 자각을 증진시키고, 세계의 지도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올바르고, 안정적인 도시와 마을들을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이는 것”

이것은 하비타트II에 대해 모든나라들을 위한 지도적인 원칙으로써 제공된 전반적인 목적입니다. 이것은 준비위원회에 의해 1994년 4월에 제네바에서 개최된 첫번째 실제회기에서 권고되었습니다.

“전반적인 인간주거목적은 인간주거의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모든 사람들의 특히나 도시와 농촌의 빈민의 생활조건과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의제 21의 7장에서 설명되고 있는 것으로, 하비타트Ⅱ를 위한 세계적 행동 계획의 주요한 목적을 위한 기초로서 제안된 것이다. 이것은 준비위원회에 의해 1994년 4월에 제네바에서 개최된 첫번째 실제회기에서 권고된 것이다.

1. 세계적 행동계획을 위한 세가지의 지침들을 추천하는데 있어서, 준비위원회는 인간이 하비타트Ⅱ의 촽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회적 진보와 경제적 성장을 위한 주거의 중요성과 사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어 서 통치와 지도의 중요성이 이러한 권고를 통해서 명확히 인식되어졌습니다.

2. 따라서 세계적인 행동계획은 그들의 거주에 있어서 사람에 촽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것에 의하여 정부와 비정부조직의 지도자들이 남녀 모두 동등하게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생활환경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과 의지를 증가시킬 것에 촘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세계적 행동계획은 정부와 비자를 창조하는 것을 돋는 권한을 부여하는 전략을 중진시키는 것을 도울 조건들을 창조하는 것을 돋는 권한을 부여하는 전략을 중진시키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생활환경을 균등하게 개선하고, 유지시킬 활동들에서 그들의 권리와 책임을 훈련하고, 그들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3. 모든 사람들의, 특히 도시와 농촌의 빈민들의, 생활환경과 노동환경과 인간주의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질을 향상시키기는 것을 돋는데 있어서, 이러한 세계적 행동계획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세계적으로 주거와 주거지 개발을 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전략을 증진시키는 것.
- (b) 주요 실제적인 프로그램 지역에서 권한을 부여하는 전략을 수행하는 노력을 획득하는 것.
- (c) 권한을 부여하는 전략을 수행하는 국가들을 위한 국제적인 지원을 조직하는 것.

4. 권한을 부여하는 전략의 기초가 되는 원칙들은 도시의 참여, 지속성, 그리고 균등이다. 각기의 것들은 사람지향적이고, 다양한 문화적, 정치적 내용에서 사람들의 활동들을 이끌수 있는 것들입니다. 또한 원칙들은 추상적이지도, 근접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도시의 참여는 함께 살아가는 것이 단지 수동적인 활동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말은 주거에 있어서 사람들이 직접적으로든, 아니면 그들의 대표자를 통해서든간에 능동적으로 공통적인 이익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속성(안정성)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기회와 요인들에 맞서서 그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참여하는 것을 요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들의 행동방식과 문화적 제도들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균등은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자원을 배분하는데 있어서 공정한 적용을 말합니다. 균등은 참여를 증진시키고, 단결을 이끌어내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많은 주거의 특징이 되는 사회불안, 퇴화, 비조직화를 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의 조합은 도시에 대한 새로운 사고를 제공하고, 모든 인간주거의 가장 크고, 힘있는 요소를 제공합니다.

5. 물론 도시생활은 일반적으로 농촌생활의 커다란 기본구조안에서 몇천년 동안 인간주의의 부분으로서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있어서 세계의 인구의 절반이 도시에서 거주하는 상징적인 점을 지나고 있기때문에, 도시지역들을 좀더 인간적인 환경으로 만들기 위하여 도시를 재검토할 긴급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6. 대부분의 인간의 역사동안 상대적으로 제한된 숫자의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거주지로서의 도시는 통제가능해왔고, 설계가능하기까지한 환경이어왔습니다. 개발의 힘으로서 인식되어지기 때문에 도시는 도시를 효율적이고 매력적으로 만드는 경제적, 문화적 기능들을 갖습니다. 농촌상품에 대하여, 시장을 제공하고, 가치를 붙이면서, 도시는 성장하여 왔고, 이제는 그 경계를 넘어서 자원을 요구하는 상호연관된 과정과 서비스 활동의 망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자원들은 노동을 포함하며, 이러한 노동은 전통적으로 직업이 있는 곳으로 옮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로서, 시장으로서, 서비스 제공자

로서 도시는 성장해왔고, 운송과 의사소통 기술에 의하여 역사적으로 제한되어 왔습니다. 최근 몇십년동안에 이러한 한계조차 산업기술의 출현과 확산, 그리고 사람과 상품, 서비스의 이동에 의하여 제거되어 왔습니다. 지난 거의 50년동안에, 그리고 인간의 역사상 처음으로 많은 도시들은 “거대한 도시”와 “도시덩어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7. 도시화의 도전에 맞서, 전통적인 제도들은 안정적인 도시사회를 창조하는 역할을 잘 수행해 오지는 않았습니다. 환경과 자연자원들에 대한 도시 주민들의 태도는 책임감과 절약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부족합니다. 도시생활의 밀접한 상호연관에 인하여 필수적으로 만들어진 조화인 외부인에 대한 의무는 쉽게 내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정치는 공존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분파주의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범죄, 부정부패, 병, 공해, 스트레스, 실업과 수많은 다른 문제들이, 지금 좋게든 나쁘게든 간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에서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어두운 이미지를 도시생활에 드리우고 있습니다.

8. 사회적, 경제적 발전이 사람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있어 발전을 의미한다면, 그리고 도시가 개발의 원천이라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에서 성장하고 있는 환경의 열악화와 비조직화는 새로운 제3세계인 발전하지 않는 세계를 제안합니다. 남북을 통틀어 이러한 새로운 세상에 있는 나라들은 시장과 생산자로서 덜 효율적으로 되가는 도시, 덜 인간적이고, 덜 매력적인 도시를 나타냅니다. 또한 이러한 도시들은 국가적인 결속과 응집력을 깨뜨리는 분파주의적 도시들이며, 만성적인 문제들에 대처할 국가적 자원을 고갈시키고, 사람들이 서로에 대하여 불신하고, 안전하지 않은 도시이며, 사회가 아니라 수용공간으로 전락한 도시입니다. 그러한 새로운 3세계가 피해질 수 있고, 모두를 위한 삶의 질에 있어서의 이득이 지속될 수 있으려면, 거주는 특별히 도시의 거주는 인간개발을 위한 동반자 사이의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합니다.

9. 21세기를 막 시작하려는 시점에서, 도시들은 인류를 위한 희망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 희망을 이행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회적 계약이 요구되며, 그것은 도시화되어가는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은 세계적 행동계획의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같은 계약들은 권한을 부여하는 전략을 통하여 진화될 수 있고, 거기에서 지도자들과 대표자들은 능동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의 조직들을 모든 층에 있는 정부와, 민간부문과, 다른 비정부조직들과, 그리고 그들 자신의 사회에서 서로서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참여시킵니다. 그것은 그들이 원하는 종합적인 세계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고, 행동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며, 필요한 자원을 인식하고 배분하기 위한 것이며,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동반자적 관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며, 목표들이 기본적인 원칙들과 연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10. 도시의 참여, 지속성, 그리고 균등의 원칙들은 새로운 자발성과 지도력의 정신으로, 자기 검사와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전략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작업들은 가장 영향력이 있고, 도시를 만드는데 가장 기여할 수 있으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권한을 부여하는 전략은 도시의 도덕을 지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모범적인 통치를 통하여 그들의 도시를 인류를 위한 새로운 거주지로 다시 만드는데 협력할 수 있습니다.

II. 주요 문제들(논쟁거리)

A. 변화하는 세계를 이해하는 것

11. 지난 20세기의 세계적 흐름은 세계인구의 대부분에게 도시화된 거주지를 소개해 왔다는 것입니다. 도시의 긍정적인 경제적, 사회적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그리고 동시에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개선된 삶의 질을 공급하기 위

한 이러한 새로운 인간환경으로 인하여, 어떻게 거주지가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더 나은 조건으로 만들기위하여 무엇이 행해져야 하는지에 대한 더 많은 이해가 긴급하게 있어야 합니다.

12. 거주지들은 모든 지역에서 기존의 문화들과 지식을 초월하는 많은 문제점을 블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도시들과 마을들은 전통적인 제도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어 영향을 끼치는 경제적 망들로 결합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시학자인 루이스 멤포드는 저서에서 “도시의 궁정적인 기능들은 새로운 제도적 정비없이 생성될 수 없으며, 현대인이 지금 요구하는 광범위한 에너지를 다룰수 없습니다. 너무커진 마을들과 그것의 요새를 핵심적이고, 매우 조직화된 도시들로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만큼의 대담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변화의 첫번째 요소는 인간사에서 거주의 변화하는 역할을 더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토론이 기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공개되어야 하며,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은 이해하는 것을 돋기위해 물리적인 요소들을 이용하며, 의제 21에서 예견하였던 것처럼, 인간행동의 더 안정적인 방식들을 이끌어낼 새로운 태도들을 만드는 것을 돋는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13. 도시 정상회의인 하비타트II는 세계가 급격한 변화의 속에 있는 20세기의 마지막 10년인 1990년대에 열리고 있습니다. 첫째, 기술이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기술로 인하여 구조적인 실업과 새로운 생산과 서비스방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둘째, 세계와 국가의 경제가 변화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본들이 더 이상 그들이 전에 있었던 은행과 같은 곳에 머무르지 않고 있고, 경제가 훨씬 더 불안정하며, 더 많은 힘들에 영향을 받기쉽기 때문입니다. 세째, 국가적 정부들이 탈중심화를 고려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새로운 활동가들을 고려함에 따라 제도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째로, 인구의 증가와 도시크기의 확대로 인하여 오늘날 문제의 규모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극의 정치적인 축들이 사라졌고, 이것은 사상적인 결핍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도시지역에서 이러한 모든 변화들은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장단기적으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14. 급격한 변화하는 현재의 시기는 사회가 그 스스로 새로운 관계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도시의 역할이 실제적이 될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시화된 세계를 향한 흐름은 명백합니다. 그리고 농촌의 기술이 진보하고, 교외에서의 생활이 개선된다 할지라도, 전통적인 농촌과 도시의 관계는 변화될 것입니다.

15. 추가로 인구변화와 정보화시대에 의해 생성된 문화적 양상들의 확산때문에, 도시들은 세계적인, 상호연관적인 망의 중심점으로서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망은 도시가 거대해짐에 따라 정치적인 자치권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와 도시 사이의 관계, 국가와 지방정부 사이의 관계가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는 위협이 될 수도 있으며, 한편으론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B. 변화를 위한 올바른 전략

16. 많은 복잡한 변화에 끊임없이 적응하고 있는 전략을 통하여 위협과 기회에 대해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은 세계적 행동계획의 목표입니다. 그러한 상황하에서 적당한 전략은 권한을 부여하는 전략이며, 시민들의 능력안에서 모든 시민들이 자발성의 새로운 정신에서 그들 자신의 사회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시민들에게 좋은 정치를 통하여 감독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C. 도시들에 대한 메시지

17. 도시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통하여 우리는 더 많은 정치적인 논쟁을 통하여 해결되서는 안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증거는 명확하므로 이것에 의하여 우리는 다음의 메시지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도시들은 통제없이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18.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시의 인구는 폭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의 센서스를 통하여 우리는 전에 예견했던 것보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남아메리카에서 인구가 더 느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일한 예외들은 가장 높은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예를 들면 중국) 도시화되어 있지 않은 도시들과, 피난민들을 위한 중심지가 된 도시들에서 상대적인 비교에 의해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거대 도시들조차 세계의 가장 크고, 가장 성공적인 경제에서 밀집하게 중심화되어 있는 도시들을 제외하고는 빠른 인구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않습니다. 도시화의 국가수준에서의 성장은 경제의 성장에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세계적인 거주에 대한 조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도시들에서 거주문제들의 규모와 환경문제, 그리고 사회적 기반시설과 서비스 공급의 결핍은 급속한 도시의 성장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대부분의 정부와 개발지원 기관들이 빠르게 도시화되어 가고 있는 세계에서 그들의 정책과 제도들을 잘 채택하지 못해온 결과라는 것입니다.

■ 좋은 정치는 더 나은 상태를 만듭니다.

19. “좋은 정치”는 지도력과 관리, 그리고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입니다. 좋은 정치는 경쟁하고, 때때로는 반대적인 힘들사이의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고, 한 예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는 것과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비용을 낮추는 문제사이의 균형을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80년대의 증거를 통하여 우리는 좋은 정치로 인하여 주요한 경제적, 사회적 이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상대적으로 낮은 1인당 소득을 가진 나라에 있어서 평균을 넘어서는 10년에서 15년의 기대수명에서의 증가를 들 수 있습니다. 좋은 정치라는 것은 도시와 지역, 그리고 중앙정부가 그 경계선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충분한 물공급, 그리고 위생과 교육, 의료보험 등을 제공하는 범위에 의해 평가되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도시들은 쉽게 관리되어질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에 봉착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문서화는 되어 있지만 아직 책임있는 규제가

요구되어지는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도시 기관들에 있어 이용가능한 힘과 자원들이 증가함에 따라, 그것들의 잘못된 적용에 대한 우려와 잠재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번영은 부패행위에 대한 잠재성을 증가시킵니다. 세계의 도시중심지 사이의 상태와 흐름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우리는 사회가 문제를 풀기위해 찾아왔던 다양한 방법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도시들은 매우 나쁘게 관리되어졌는데, 그것은 도시와 자치정부가 비효율적으로 남아 있으며, 비경쟁적이고, 때때로는 부패되고, 반이상의 도시인구가 기본적인 사회적 기반시설과 서비스에 있어서 결핍을 느끼며, 열악한 조건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도시들은 요구들을 균형있게 관리하고, 공공재와 함께 사기업의 우선권을 균형있게 관리하는 열린, 그리고 책임감있고, 효과적인 도시와 자치정부와 함께 매우 잘 이루어져 왔습니다. 대부분의 도시들은 이러한 극단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시장은 좋고, 정부는 나쁘다”는 극단주의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0. 1980년대에 거주, 사회적 기반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각 개인 또는 가구의 선호도의 관점에서 각 개인 또는 가구들의 요구와 우선순위가 너무나 다양해서 시장이 공공 프로그램보다 시민들에게 더 잘 봉사할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한 이해가 폭넓게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적인 시장들을 위한 열정들은 경쟁을 보장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며, 물공급과 청소, 배수와 다른 서비스들을 극대화하기 위한 행동과 거의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자유시장에 대한 제안자들은 인구의 많은 부분이 그같은 서비스에 포함될 수 없다는 사실을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폭넓은 이해가 확산되고 있는데 그것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정부에 의한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에 의한 새로운 역할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의 부분은 토지와 금융, 그리고 건설부분에서 경쟁적인 시장이 있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또 다른 것은 개발을 관리하는 공식적인 규칙과 규제가 거주와 사회적 기반시설, 서비스의 공급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공적인 공급을 자주 하는 것 없이 저소득 그룹들을 위한 더 나은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더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입

니다.

■ 많은 도시들이 하의상달식으로 건설되어집니다.

21. 모든 도시들은 개인과 가구, 사회, 자발적 조직, 비정부조직들, 민간 기업, 투자자들과 정부기관들에 의한 자본, 전문기술, 그리고 시간의 투자에 의한 결과물입니다. 남쪽에 있는 대부분의 도시에 있어서, 개인과 이웃들에 의한 매년의 투자는 대개 도시와 자치정부에 의한 투자의 몇배를 넘어섭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아시아, 남아메리카에 있는 대다수의 도시들에 있어서는 아직 도시를 건설하고, 서비스를 개발하는 개인과 가구, 그리고 사회의 노력들이 정부, 은행 그리고 지원기관에 의해 오랫동안 무시되어 왔습니다. 정부와 지원기관들이 도시를 건설하고 개발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지원할 방법을 찾는다면, 극복할 수 없는 문제처럼 보이던 문제들이 관리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의 도시(그리고 가능하다면 자치정부와 동반자적인 관계를 수행하고 있는)에서 수백개의 사회조직들을 지원하는 것에 의해 달성될수 있는 것들은 어떤 한 정부기관이 스스로 할 수 있는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주요한 문제는 개인과 가구, 그리고 사회와 자원기관들의 노력을 잘 완성하고, 그들이 도시를 광범위하게 개선하는 쪽으로 기여하는 것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어떤 종류의 권한을 갖는 기관이 요구되어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자금지출에 있어, 책임성과 투명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자금지원과 기술적인 충고가 다양한 요구들과 다른 거주의 선택의 문제들이 일치되는 방법으로 잘 이용될 수 있을까요? 권한을 갖는 기관들은 토론을 통하여, 저소득가구는 외부기관으로부터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들 스스로 최선을 다할수 있는지에 대하여 긍정적인 방향에서 비정부조직에 대한 논쟁을 활성화시킵니다. 대부분의 정부와 지원기관들이 하부상향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더 많은 사람을 지원하고, 그렇게 지속적인 과정을 수행할 제도적인 틀은 거의 만들지 못해 왔습니다.

■ 도시들은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2. 도시들은 아주 낮은 에너지와 낮은 자원사용, 그리고 최소한의 낭비를

가지고 높은 수준의 생활수준을 만들어낼수 있는 거대한 잠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들이 생산과 인구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있어서 농촌의 거주나 분산된 인구들에 비해 명백히 이득이 됩니다. 고밀집은 가구당으로 비교하면, 훨씬 적은 비용으로 관으로 연결된 물공급, 가구와 인간이 버리는 쓰레기를 모으고, 처리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향상된 원거리 통신망과 건강과 교육, 응급서비스에 대한 공급을 가능하게 합니다. 거대한 도시안에서, 인구의 집중은 하수처리의 문제를 만들수 있고, 또한 처리되어야 하는 하수와 배설물의 처리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계의 인구의 대부분이 살고 있는 더 작은 도시나 마을에서의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집중적인 농작물생산을 위한 하수의 성공적이고, 안전한 사용의 많은 예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양의 물을 필요로하지 않는 효과적인 위생시스템의 예들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도시에 있는 가정과 기업에서 민물의 사용을 줄이는 기술(사용된 물을 다시 재활용하거나, 직접적으로 다시 사용하는 방법을 포함하여)은 이미 잘 알려져 있고, 그것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물의 사용을 지배하는 것이 도시가 아니라 농촌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지역에선 민물자원의 사용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시에서 생산과 소비의 집중으로 인하여 자원사용에 있어서 자원재생, 재활용과 재사용시스템을 통하여 효과적인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이것은 이러한 과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는 전문기업의 덕이기도 합니다. 도시에서 훨씬 더 높은 인구의 집중은 인구에 대한 토지수요가 감소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 있어서, 도시지역은 전국토의 1%도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 세계의 인구는 유럽도시에 있는 매우 높고, 아주 가치있는 거주지역의 밀집도로 따지면, 200,000스퀘어의 땅이면 충분히 살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오만이나, 세네갈의 크기와 같습니다. 도시에 있어서 생산과 가구들의 밀집은 가정과 공장에서 열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화력연료를 감소시킬 잠재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산업, 또는 화력발전소로부터 쓰레기 과정의 열을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폐열발전(발전시에 생긴 증기를 이용하여 다시 발전을 행하는 것)을 한다던가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의 증가를 통하여 자동차가 필요로 하는 화석연료와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할 가능성도 크게 생깁니다. 도시는 또한 재미있는 곳입니다. 그들은 시각, 장식예술에서, 그리고 음악과 춤, 문학과 극장에서나 보여질 수 있는 사회가운데 있는 가장 가치있는 문화적 예술품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도시에서, 건물에서 거리에서, 그리고 각 사회의 역사와 문화의 중심부를 형성하는 설비들에서 발전됩니다. 인기있는 문화를 가장 생동감있게 표현한 몇몇은 예술과 음악부문에 있어서 더 가난한 지역에서도 명백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접하여 살고 있는 이방인을 위한 필요성때문에, 도시는 사회적인 결속과 응집력을 위한 궁극적인 원동력입니다. 이러한 결속과 응집력은 도시의 서비스와 시장에 대한 균등한 접근을 통하여 더욱 잘 이루어집니다. 균등과 세계적 접근성에 대한 대중적인 정책과 민감한 지도력을 통하여 도시는 민족과 성에 대한 편견이 최소화되어질 수 있는 지역입니다.

■ 도시와 시골은 적이 아닙니다.

23. 도시와 시골의 환경은 도시화되어가는 세계에서 훨씬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국가적인 그리고 국가하부적인 정책을 통하여 이해되어지고 통합되어질 수 있는 동일한 사회적, 경제적 시스템의 두 부분일 따름입니다. 이러한 동전의 한면위에 있는 더 효과적인 농촌의 활동을 통한 농촌생활의 향상은 초과노동과 증가된 생산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가치를 추가하는 과정은 어느정도 범위에서 노동과 생산물을 빼앗을 수 있지만, 도시의 상대적인 이익은 궁극적으로 거대한 양의 노동과 제품을 가질수 있게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농촌의 발전은 도시의 발전을 촉진시킵니다. 동전의 다른 한면위에 있는 도시는 그것의 행정적인 경계를 뛰어넘어 농촌지역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사회적, 경제적, 생태학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큰 부분에서, 도시의 소비와 생산방식 도시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를 결정하고, 그러므로 농촌의 지역적 개발과 환경보호 정책을 만드는데 있어 변수가 됩니다.

준비위원회를 위한 설명:

이 장은 1995년 동안에 완전히 개발되어져야 합니다. 실체에 대한 주요문제들은 지금 현재 국가적이고 지역적이며, 그리고 세계적인 준비과정을 통하여, 그리고 다양한 다른 통로를 통하여 행하여지고 다양한 검토작업을 통하여 유추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적 행동계획에 의해 주의를 필요로 하도록 이미 제안되어 온 많은 거주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문제에 관련된 흐름들이 검토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거주와 거주지개발을 위한 국가적인, 그리고 국제적인 활동에 중점을 두는것을 도울 그러한 흐름들의 상대적인 중요성과 전망의 범위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자원들의 종합으로부터 나올것이고, 실체적인 문제들뿐만 아니라 생활환경의 효과적인 개선을 위해 필요한 과정을 더 엄격하게 정의내리는 것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많은 실체적인 문제들에 대한 되풀이되는 강조때문에, 측정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것과 이러한 문제들을 위한 활동은 이미 시작되어 왔고, 1995년 3분기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프로그램 도안을 위한 기본틀을 제시하기 위하여, 토론되어질 문제들이 두가지의 주요한 회의주제 아래에서 모여져야 합니다. 이 두가지 주제란 하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적당한 거주이고, 또다른 하나는 도시화되어가는 세계에서의 지속적인 인간의 거주입니다.

개발의 규모는 행동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적당한 방법과 도구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적어도 두가지의 규모가 실체적인 문제들을 나타낼 것입니다. 하나는 친숙하고 밀접한 이웃과 사회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권한을 부여하는 전략은 직업과 거주,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공급을 돋기위해 사람들이 더 많은 일을 할수 있도록 합니다. 또하나는 효과적인 그리고 더 잘 반응하는 제도적인 구조와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원을 배분하고, 다양한 목표들을 종합하기 위한 더 조화로운 관리기술들을 요구하는 도시와 도시주변지역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국제적인 문제들은 국가적인 그리고 지역적인 행동계획의 구성과 이행을 위한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에 우선적으로 관련됩니다.

그러나, 만약 세계적인 행동계획이 거주와 거주지 문제에 대한 백과사전보다 더 나아야 하고, 실체적인 프로그램의 개론보다 더 나아야 한다면, 우리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들 가운데에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은 정책개발과 참여, 자원이동, 제도를 만드는 것, 훈련, 연구, 기술이전, 그리고 모든 부문들과 실체적인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주요목표들과 같은 의사소통을 포함합니다. 세계적 행동계획이 가장 우선적이고 급한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일련의 실체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반면에, 그것은 사람들의 요구에 응답하고, 빠르게 도시화되어가고 있는 세계에서 힘이 있고, 지속적으로 관련이 있는 세계적인 행동계획을 제공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칙과 노력은 권한을 부여하는 전략을 만드는 과정에 전력을 다하는 정부와 다른 기관들에게 이성적인 토대를 제공할 것입니다.

III. 원칙

24. 시민의 참여, 지속성, 그리고 균등의 세 가지 원칙은 인간이 지속적인 개발의 중심에 있다고 말한 리우선언의 제1원칙과 일치합니다.

A. 시민참여의 원칙

25. 시민참여의 원칙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권리들을 갖지만, 또한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통의 이익에 능동적으로 기여해야 할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디서나 시민참여의 높은 수준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한데, 그것은 모든 인간들의 사회적인 요구와 어떤 사회에 속하려고 하는 요구를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시민참여에 대한 관심없이는 거주지들은 거주지의 개발을 위해 가장 큰 부분인 그것들의 사회적 응집력을 잃을 것입니다. 시민참여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a) 인간의 권리를 이해하고 실천하며, 다른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성과 남성들이 그들의 잠재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권리가 주어져서,

그로 인하여 그들의 미래에 영향을 끼치는 결정에 참여하고, 다른 이들도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요구를 넘어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권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b) 사회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 대한 의무를 받아들이고 자신 속으로 내면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의 생활환경을 위하여 책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들이 더 강화되어야 하고, 자발성의 정신이 권장되어야 합니다.

(c) 결속의 정신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모든 사람들은 상호의존적이고, 그래서 서로서로 도와 줄 사회적 관계를 갖습니다. 이러한 관계에 의하여, 약자와 피권자들을 돋습니다. 개인과 그룹들의 기본적인 권리들을 부정하는 공적, 사적 장벽들이 제거되어야만 하고, 협력적인 구조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d) 희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거주지들은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능동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한 좋은 생활의 약속을 유지해야 합니다. 배타적인 태도와 제도는 제거되어야 합니다.

(e) 정부는 책임감 있게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좋은 통치는 사람들이 지도력과 공개적이고 효과적인 참여과정, 그리고 교육, 정보확산과 의사소통을 통하여 그들의 책임감과 권리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을 돋습니다. 정부는 또한 규범과 규칙, 규제와 표준을 정하는 것에 의해 보호를 하고, 개선되는 기능들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한 더 나은 조건을 만드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역량들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B. 지속성의 원칙

26. 어느 조직을 위한 지속성이란 시간을 넘어서 위험과 기회를 예측하기 위하여 행동의 방식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시가 안정화되려면, 도시의 주민과 조직들은 그들의 조직과 생산과 소비의 방식, 그리고 문화적 제도 등을 감독하고 적용하는데 참여해야 합니다. 그것은 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피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기회를 이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27. 지속적인 도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a) 더 폭넓은 경제적 개발에서 지속적인 역할을 찾는 도시입니다. 거시경제적인 기능이 없는 도시는 사라지고, 쇠퇴하기 쉬울 것입니다. 국가적 경제 계획이 지역적인 상대적 이점위에서 세워져야하고, 거주지들 사이의 생산적인 관계를 지원해야 합니다.
- (b) 지속적인 도시는 자연과 균형을 이루는 도시입니다. 거주지가 소비하는 자원들은 공간과 시간에 있어 자원의 한계를 의미합니다. 자원을 사용하는 것은 장기적인 계획과 영향력 평가의 과정을 통하여 개발결정에서 고려되어져야 합니다.
- (c) 지속적인 도시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노동에 대한 효과적인 수요에 대응하고, 더 높은 수준의 복지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훈련과 교육을 통하여 융통성있고, 적응성있도록 만들어진 노동력은 지속적인 도시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지식과 기술이 사람들이 잠재성을 발휘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대중매체를 포함한 교육과 훈련을 위한 기관들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 (d) 지속적인 도시는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합니다. 질병, 가난, 재난의 위협, 범죄 그리고 불확실성은 지속적인 도시에 정반대의 현상인 이기심을 만들고, 현시대에 대한 걱정을 낳습니다. 적당하고 보호적인 사회적 기반시설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용되어져야 합니다.
- (e) 지속적인 도시는 부채가 미래의 세대에게 불균등한 짐이 되지 않는 사회입니다. 예를 들면, 자본투자로서의 대부는 미래세대에게 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미래의 선택을 불공평하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 사회적, 인간적, 그리고 환경적 자원은 미래 개발선택을 유지하기 위해 주의깊게 계획되고, 예산이 짜여져야 합니다.
- (f) 지속적인 도시는 도시의 관리기능에서 계획과 감독을 통합 합니다. 계획과 감독없이는 지속성은 정의되어질 수도, 평가되어질 수도 없습니다. 흐름을 평가하고, 상태를 예측하기 위한 수단없이는 사람들은 적용하기 위한 요구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모든 층에서 강화되어야 합니다.

C. 균등의 원칙

28. 그들의 기본적인 요구(숙소, 음식, 안전, 건강, 고용을 포함하여)가 공정성과 일치한다면, 민족, 인종, 종교, 정치적, 그리고 다른 선호도와 상관없이 각개인은 더 능력있고, 안전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에 대하여 기여하는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데 있어서 좀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기본적인 요구들을 수용하는데 있어서 지속적인 불공정성과 배타성은 이기적이고, 반사회적이며, 그리고 반생산적인 행동을 양산할 것이며, 이것은 결국 시민의 정신을 파괴할 것입니다.

29. 균등한 도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a) 평등이 보장되는 도시는 모든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자신의 미래에 영향을 끼치는 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참여구조가 모든 층에서 채택되어야 하고, 적절한 정보가 정기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모든 시민의 효율적인 참여를 위해 공개되어야 합니다.

(b) 균등한 도시는 모든 사람을 위한 숙소와 기본적인 서비스에의 접근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부자이던 가난한 사람이던, 남자이던 여자이던, 건강한 사람이건 장애인이건간에 보장되는 개인의 권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권리들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와 협력하여야 합니다.

(c) 균등한 도시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적이고, 생산적인 생활을 하기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행해진 일에 대한 균등한 보상은 사람들이 그들의 권리 를 실천하고, 그들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각개인을 위한 적당한 삶을 보장하는 것은 가장 우선적인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d) 균등한 도시는 모든사람에게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 안전을 제공합니다. 이것들은 사람들이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실천하는데 있어 자유로워지려 한다면 반드시 공정함과 함께 이루어져야할 기본적인 요구들입니다. 적당한 건강과 공적인 안전 서비스는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중의 하나입니다.

(e) 균등한 도시는 도시의 약자들을 돌봅니다. 균등이라는 것은 서로서로

기본적인 요구들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계약입니다. 어린이, 장애인, 노인과 다른 약자들은 개인적인 관계, 가족, 지역조직, 비정부 조직, 그리고 정부를 통하여 돌보아질 것입니다. 그러한 제도와 구조가 우선적인 문제로서 지원되어야 합니다.

(f) 균등한 도시는 모든 사람사이의 이동성과 의사소통을 제공합니다. 도시안에서 돌아다닐수 없고, 서로 의사소통을 할수 없는 사람은 완전하게 그들의 권리와 책임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교통과 의사소통시설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g) 균등한 도시는 자원에 대한 지불없이 자원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자원이 시민에게 속해있든, 아니면 멀리에 있는 타지의 사람에게 속해있든지 간에, 진정한 비용이 적당한 가격정책과 회계시스템의 적용을 통하여 도시의 생산자와 소비자에 의해 나누어져야 합니다.

(h) 균등한 도시는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모든 사람들의 문화적 개발을 가능하게 합니다. 완전한 인간적 잠재성을 배우는 것을 통하여, 그리고 문화적 표현을 통하여 실현될수 있습니다. 인간심성의 개발과 자기표현을 위한 방법들은 주거지에서 최고로 현실화되는 명백한 인간의 특성입니다. 문화적 표현을 위한 교육과 수단들은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i) 균등한 도시에서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가진채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집니다. 정부는 직접적으로 시민들에 의해 또는 그들의 대표자를 통하여 합의된 목적을 위해 자원을 사용하고,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러한 합의없는 공공자원과 권한의 사용은 자기소외와 불화를 낳습니다. 정부는 자원의 배분을 위한 목적과 우선순위에 대하여 모든 시민들 사이의 일치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IV. 전략

A. 권한을 부여하는 전략

30. 세계 행동계획의 전략은 권한을 부여하는 전략이며, 그것에 의해 모든

사람들은 모든 층에서 정부와 함께 일하고, 민간부문, 다른 비정부조직과 함께 일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공동의 미래를 결정하고, 행동을 위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자원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배분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동반자적인 관계를 만들고, 그리고 목표들이 기본적인 원칙들과 일치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의 사회에서 서로 함께 일합니다.

31.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a)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개인적인 권리와 의무를 실천하고 그들의 생활환경을 균등하게 유지하고 개선할 활동에 그들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상태 (b)모든 조직과 기관들이 상호활동하고, 협력할 수 있고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동반자적인 관계를 만들수 있는 상태 (c)정부에 의한 자기개선을 위한 상태를 만듭니다.

B. 전략적 목표

32. 전략적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a) 규칙적이고, 광범위한 토론과정을 통하여 평등하게 모든 남성과 여성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수준에서 시작하여,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수준으로까지 확대되어 있는 모든 주요 활동가들이 운데서의 조언과 토론, 그리고 이들에 의한 참여는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효과적이 거주목표를 구성하는데, 그리고 모든 층에서 활동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수적입니다. 그 과정에 참여하는 각층은 다른 층들을 교육시키고, 영향을 끼칠것입니다.

(b) 전략적 목표는 개인과 주요그룹들 사이의 동반자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동반자적 관계는 특히나 동맹적 관계를 만들고, 자원을 공동출자하고, 지식을 공유하며, 기술들을 기여하고, 그리고 상대적인 이익을 이용하는 것을 통하여 참여자들이 상호 지지하는 목표들을 통합시켜 줄 것입니다.

(c) 전략적 목표는 사람들의 요구에 더 잘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제도적인 변화들 가운데서 적당한 층으로의 어떠한 책임과 권한의 이전은 권한을 부여하는 전략을 도울지도 모릅니다. 비정부조직들과 지역사회조직들은 지역사회와 약자그룹의 요구를 정부를 정부가 인식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부문은 적당한 상황하에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사람들에 요구를 잘 수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와 기술적인 기업조직들은 대응능력을 만드는 것을 도울수 있습니다.

(d) 전략적 목표는 지도력과 관리에서 공공서비스의 중요성을 강하게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책임과 권한의 위치에 있는 사람의 행동은 지역사회의 나머지를 위하여 하나의 모델을 제공합니다. 지도자와 관리자들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정신을 마음속에 갖고 있지 못하고, 윤리적 행동을 따르지 않는다면, 조직들은 의심과 냉소를 맞게 될 것입니다.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 그리고 관련된 활동에 있어서 성평등에 대한 민감성을 발전시키는 것은 모든 지도자들과 정부, 그리고 비정부조직의 의무입니다.

(e) 전략적 목표는 모든층에 있는 정부와 비정부조직의 지도와 관리, 그리고 활동을 위한 역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지도와 관리, 그리고 활동은 모든 층에 있어서 능력과 역량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한 역량들은 거주지를 개발하는 과정을 이해하는것,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미래의 전망을 제시하는 것, 우선순위를 인식하는 것, 행동전략과 정책에 대한 동의를 만드는 것,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동시키고, 배분하는 것,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관련된 활동들을 조화시키고, 규제하는 것, 역량제한을 인식하고, 역량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 적당한 방법과 기술들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들을 포함합니다.

(f) 전략적 목표는 의사결정을 하고 자원의 배분을 하는데 있어서의 책임성을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의사결정과 관리의 투명성은 금융회계 시스템과 프로그램 예산화 시스템이 적절하게 행해져야 하고, 독립적인 기관에 의해 정규적이고 공개적으로 감사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부정부패의 제거를 통하여 공공자원이 공공의 목표를 위하여 이용되어지고, 의도된 결과를 달성하는 것이 더 확실해 질것입니다. 독립적인 민원조사관(옴부즈맨) 서비스의 제도화는 모든 정부의 일상적인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g) 전략적 목표는 정부의 보호적인 역할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정부는 사람들과 그들의 동반자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규범적인 생각들과 가치들을 인식하고 통합하는 것에 의해, 평등하고 명확한 정책, 표준, 규칙, 규제들을 만드는 것에 의해,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시민들과

정부간의 정보의 공개적인 생산과 양자간의 의사소통을 고무시키는 것에 의해 위의 작업이 수행되어져야 합니다.

(h) 전략적 목표는 정부의 수정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비정부조직은 건강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으며, 불공평한 상태로부터 개선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그중에서도 특히 공개적인 합법적이고 행정적인 과정의 기초하에서 목표로 되어 있는 기술적인 지원과 자원재배분을 제공하는 것에 의해, 편견없이 논쟁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것에 의해, 공정하게 표준과 규칙, 그리고 규제를 적용하는 것에 의해, 주위환경에 의해 불리하게 영향을 받을지도 모르는 이재민과 약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i) 전략적 목표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환경에서 개선을 지원할 적당하고 적절한 자원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재정구조는 자유시장의 구조들에서부터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변수에 의존하는 정부보조에까지 폭넓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책정하고, 비용을 회수하며, 수입을 공유하며, 빈민을 위한 무담보대출, 그리고 공채의 발행과 같은 구조들이 다양한 결합방법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수입을 만들고, 분배하는데 있어서 평등이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j) 전략적 목표는 모든층에서 인간적, 기술적, 제도적, 그리고 재정적 자원들의 효과적인 이동과 사용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어떤 공공정책들과 사적인 활동들은 배타적인 의도를 가질지도 모르며, 차별적인 활동들을 고무시킬지도 모릅니다. 명백히 관련이 없는 지역에서 다른 정책들과 활동들이 부주의하게 장벽들을 만들고, 이로 인해 사람들이 그들의 책임과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권한을 부여하는 전략은 기회와 자원들로부터 사람들을 배제하도록 하는 장벽들을 제거하는 것을 도울것입니다.

(k) 전략적인 목표는 전세계적인 탈문맹과 지속적인 일반교육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사실들과 생각, 그리고 의견을 만들고, 의사소통을 하며, 분석하는것은 효율적인 참여와 협력을 위한 기본을 만듭니다. 대개 고밀집사회에서 문자언어의 표현과 이해가 시민의 참여와 권한을 부여하는데 있어 주요한 점

입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생각과 사실들을 더 잘 이용하고 분석할수 있습니다.

(1) 전략적 목표는 모든 사람들이 개발과정에서 정확하고 관련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권한을 부여하는 전략은 다음을 요구합니다. 개발결정에 관련된 정보가 모두에게 공개되고, 접근가능해야 하며, 대중매체는 개발주체에 대한 사실과 의견 모두를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하며, 이용가능한 의사소통시스템이 모두에게 확대되어야 하고, 조사와 분석능력을 포함한 관리정보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지원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관련있는 조건들과 흐름들에 대한 지수들이 의사결정자들과 긴급한 문제상태에 있는 모든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정보를 주기 위하여 정규적으로 감독되고 보고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3. 권한을 부여하는 전략은 모든 거주지와 숙소를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들이 명백하게 이러한 전략목표들을 강화해야 하며, 모든 주요 활동가들이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힘을 쏟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V. 노력

A. 권한을 부여하는 전략에 대한 노력

34. 세계적 행동계획의 기본적인 전제는 도시화되어가고 있는 세계에서 새로운 사회적 계약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권한을 부여하는 전략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점차적으로 그들이 그들 혼자의 힘으로 문제들을 풀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권한을 부여하는 전략은 그 수단을 동반자로서 개발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모든 시민들과 주요활동가 그룹까지로 확대하게된다. 또한 그들 자신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게 위하여, 그리고 공공의 이익에서 그들 자신의 활동을 위하여 정부, 정부지도자들과 관리자들은 이들에 대한 참여를 확대시킵니다.

35. 권한을 부여하는 전략은 시민참여, 지속성, 그리고 균등의 세가지 원칙에 기초하여 거주지와 거주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개발을 촉진하는 상태를 창조하기 위하여 주요 활동가그룹의 노력을 요구한다. 각각의 정부층, 비정부조직과 지역사회조직, 전문가단체, 기업조직, 학문과 조사기관, 언론사회, 재정조직등 그리고 각 개인은 그들 자신의 방법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전략의 전략적인 목표를 위해 전력을 다합니다. 세계적인 행동계획은 그와같은 노력들을 고무시키고 통합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B. 정부(국가, 지역, 지방)에 의한 노력

36. 이 행동계획의 참여자로서 정부는 가능성의 전략을 통하여 여성과 남성 공히 평등하게 모든 사람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것을 약속합니다. 정치단체를 상징하는 정부는 이러한 관점에서 특별한 역할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권한을 부여하는 전략이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공유되고 위임되어야 하는 많은 힘과 책임, 그리고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준비과 정과 동반자적 관계, 세계적인 교육, 정보수집과 의사소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통하여 시민의 참여를 돋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정부의 지원자, 중재자, 그리고 조정자로서의 기능을 통해서 뿐만아니라, 정부의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만들며, 법을 제정하고, 수입을 올리며, 동기를 부여하고, 보조를 제공하는 관리와 규제기능을 통해서 정부는 또한 인간거주의 개발의 지속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균등의 개념이 모든 시민에 의해 공유되는 시민정신의 일부분으로서 간주되는 반면에, 규범을 세우고, 자원을 올바르게 배분하는 것을 돋는것은 정부의 지도력입니다. 평등하고 지속적인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정부는 희소자원에 대한 폭증하는 요구를 중재합니다. 효과적으로 그들의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가 시민들의 요구에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다른 활동가들에게 그들의 권한을 양도하는 것 또한 권한을 부여하는 전략의 한 부분입니다.

37. 정부는 지금 다음의 것들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거주개발 결정에 있어서 효과적인 참여를 통하여 그들의 권한과 책임을 실천하기 위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조건을 만드는 것.

(i) 정부는 개발에 대한 모든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공개적이고, 규칙적이며, 광범위한 토론과정을 통하여 시민들을 포함시킬 것입니다. 지속적이고 균등한 개발은 시민들의 요구와 이익이 표현되어지고, 시민들의 우선순위가 준비과정을 통하여 인식되고,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활동들에 대해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ii) 정부는 상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기 위하여 그리고 개발과정에서 그들의 적절한 표현을 위한 기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규칙적이고 공개적인 회의에서 시민들과 함께 일을 할 것입니다. 시민권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 사이의 하나의 사회적 계약이기 때문에, 모든 구성원들은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이러한 권리와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적, 법적, 정보와 의사소통구조를 유지하는 것을 도와야만 합니다.

(iii) 정부는 여성들의 능력과 관심사항, 그리고 요구들이 모든 남성들과 함께 균등하게 모든 참여과정으로 통합되어지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성은 개발에서, 특히나 권한을 부여하는 전략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차이를 만듭니다. 재생산과 아이를 기르는 책임은 남성과 여성사이에서 공평하게 공유되어져야 합니다. 개발에서 여성의 생산적인 기여는 능동적으로 인정되어져야 하고, 참여하는 과정으로부터 여성을 배제하는 제도적인 조건들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iv) 정부는 개발과정에서 젊은 사람들에 의한 참여를 위한 수단을 보장할 것입니다. 지역적인 의사결정에의 참여와 지역사회에 대한 개인적인 기여는 시민의 본능적인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시민참여에 대한 강한 의식은 의미 있는 참여과정과 자발성을 통하여 인생의 초기에 개발되어져야만 합니다.

(v) 정부는 개발과정에서 노인들에 의한 참여를 보장할 것입니다. 많은 사회가 고령화되어가고 있고, 대가족이 핵가족으로 나누어지고 있기때문에, 많은 수의 자기의존적인 노인들의 요구가 수용되어져야 합니다. 참여구조를 통하여 노인들은 그들의 요구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사회적인 기반시설, 교통,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들이 고령화되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vi) 정부는 적절한 자원과 의사결정 과정에 약자그룹에 의한 접근을 보장할 것입니다. 정의에 의하여, 약자그룹들은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지 않는 환경에 의하여 특별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그룹들의 특별한 요구들이 거주와 거주지 프로그램에서 능동적으로 찾아지고, 명백히 표현되어야 합니다.

(vii) 정부는 개발프로그램을 위한 기초로서 참여의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는 것을 지원할 것입니다. 모든 시민들은 거주와 거주지 문제들과 기회들을 인식하기 위하여, 그리고 개발과 평등한 자원배분을 위한 목표와 우선순위를 만들기 위한 상호적이고, 토론적인 과정에 참여되어야 합니다.

Ⓑ 정부는 도시화 과정에서 참여의 효율을 높히기 위하여 개인들과 기관 그리고 주요 그룹들 사이에 동반자적인 협조관계를 세우는 것을 지원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입니다. 정부는 모든 층에서 목표지향적인 동반자관계를 세우는 것을 권장할 것이고, 개발에서 참여의 효율을 높히기 위하여 의사결정을 위한 기관으로 그들을 통합할 것입니다. 개인, 지역사회, 비정부조직, 정부, 민간부문, 학계와 다른 기관들 사이의 협조는 각 협조자들의 효율성을 증대시킵니다. 이러한 과정은 특히나 동맹을 만들고, 자원을 투자하고, 지식을 공유하고, 기술을 지원하고, 상대적인 이익을 이용하는 것을 통하여 향상 됩니다. 협조적인 관계는 구체적인 문제들이나 도전들에 초점을 맞출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약속하는 이러한 협조적인 관계를 지원해야 합니다.

Ⓒ 정부는 주요 그룹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지원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사람들의 요구에 대한 대응력을 높히기 위해 제도적인 구조들을 바꾸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i) 정부는 다양한 층과 활동가들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개발작업과 책임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성이 있는 평가를 맡을 것입니다. 평가에서는 평가를 위한 두가지의 표준으로서 전반적인 효율성과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수

용력이 강조될 것입니다. 평가는 각나라에 따라 특수하게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일과 책임성의 적당한 균형과 배분이 문화적,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구조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ii) 정부는 적당한 책임과 권한, 그리고 자원을 시민들에게 가장 접근성이 있고, 잘 대응하는 층에게 위임할 것입니다. 지역사회 위원회들 뿐 아니라 도나 주, 그리고 지방기관은 더 높은 기관으로부터 위임된 수단을 이용하여 시민들의 요구를 더 잘 수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을 겁니다.

(iii) 정부는 거주와 거주지 프로그램에 통합적인 요소로서 비정부조직과 지역사회조직을 지원할 것입니다. 그러한 조직들은 사회자원을 조화롭게 하는 것을 도울 것이고, 지역의 요구를 인식하고, 요구하는 것을 도울 것이며, 그리고 정부와 시민들 사이의 중재활동을 도울 것입니다.

(iv) 정부는 그들의 권한을 사용하여 진정으로 경쟁적이고 반응적인 민간부문을 지원하고 보장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균등한 거주와 거주지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반응적인 수단을 찾기 위함입니다. 잘 규제되고, 경쟁적인 민간부문은 거주의 효율적인 기능에 있어 중요합니다. 경쟁으로 인하여 소비자를 위한 더 낮은 가격과 개선된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데 있어 민간부문 참여의 경쟁은 적당한 계약과정과 민간업자가 포함될지도 모르는 활동의 현명한 선택을 통하여 보장될 것입니다. 정부는 공공또는 민간부문에서 정부의 규제력을 사용하여 독점적이고, 불공정한 활동들을 막을 것입니다.

정부는 정치 지도자들, 관리자들, 그리고 공적인 부문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들 사이에 공공서비스에 대한 강한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치 지도자들, 공공부문 관리자, 그리고 공무원을 공공서비스 정신으로 감화시킬 것입니다. 가능성의 전략에 기초한 윤리적인 활동들의 조화가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의 표준으로 옮겨져야 하고, 프로그램의 관리와 행정과 평가를 위한 선으로 통합되어야 합니다. 정치지도자들은 윤리적인 행동의 모범으로서 표준을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공부문의 시스템은 행동의 윤리적인 표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개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지도력을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공공서비스를 강조할 것입니다.

정부는 역량을 만드는 활동을 통하여 모든 층에서 더 효과적인 지도, 관리, 그리고 활동을 촉진하는데 노력을 기울입니다.

(i) 정부는 모든 층에서 지도, 관리, 그리고 활동을 위한 역량을 만들 것입니다. 역량을 만드는 것은 그중에서도 특히 활동에서의 훈련, 관리기술, 지도기술, 효과적인 참여의 형태로의 역량을 만드는 것은 정부가 그들의 책임을 수행하는 능력을 갖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프로그램의 한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ii) 정부는 정기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와 능력들과 요구를 결정하기 위한 역량감사(역량평가)를 책임질 것입니다. 관리와 개발책임을 갖는 모든 기관들과 조직들의 관리와 수행역량은 규칙적인 기본위에서 평가되어져야 합니다. 역량을 만드는 프로그램은 결과적으로 정기적으로 감독되고, 필요에 따라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iii) 정부는 지역의 시민과 지역사회의 요구에 더 잘 반응하기 위하여 지방정부를 지원할 국가적인 그리고 국가하부적인 역량들을 만들 것입니다. 국가정부와 주정부는 계획을 세우고, 관리하고, 조직하고, 규제하고, 요구를 수용하고, 분배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중재하고, 도움을 주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량을 건설하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이것은 훈련, 교육, 위임, 자원배분, 그리고 다른 방법들을 통하여 행해질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비정부조직과 다른 민간부문에 의해 이루어지는 많은 역량을 만드는 활동에 적합할지도 모릅니다.

(iv) 정부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거나 준비하는 후보자를 민감하게 만들고, 훈련시키는 과정을 제도화할 것입니다. 리더쉽은 지도자들이 전반적인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전망을 제공하도록 요구받는 관리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민감한 지도력은 종종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가능성의 전략의 성공적인 수행에 가장 중요한 유일한 요소가 됩니다.

정부는 공공자원과 결정들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우선적인 요구가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을 제도화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과 사적인 부문 모두에서 자원의 남용과 정의의 악용을 초래하는 부정부패를 척결하면서, 공개성과 책임성을 제도화할 것입니다. 정부는 그들의 시민들에게 책임이 있으며, 정부는 그들의 권리를 자원의 지출에 있어 공개적으로 책임을 지는 방법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부정부패는 시민참여, 지속성, 그리고 균등에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모든 가능한 수단들이 부정부패의 악한 영향들과 싸우는데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이 가능한한 방법들에는 공무원의 봉급을 책임감과 활동에 연결시키는 것, 독립적인 감사관들과 옴부즈맨 제도를 만드는 것, 사법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 시민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 가능한한 정보를 대중매체와 대중들에게 제공하는 것, 그리고 독립적인 검토를 권장한 것 등이 포함됩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거주지의 개발에 있어 지침을 제공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들의 권리를 사용하여 오직 공공적인 이익에서 개발을 지도할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도구이며, 모든 시민들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특별한 권리를 갖습니다. 정부의 주요한 책임은 미래의 종합적인 전망을 인식하고, 실현하는 것을 돋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이를 위한 개선된 삶의 질의 하나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책임을 특히나 다음을 통하여 위임할지도 모릅니다. 목표를 세우고, 실천을 보여주는 것, 정책과 표준, 규칙과 규제, 그리고 의사결정과정에서 시민과 정부사이의 정보의 공개의 촉진과 두 가지 방법의 이전을 촉진하는 것을 통하여 위임될 것이다.

정부는 모든 거주지에서 불공정하고, 건강하지 않으며, 그리고 안전하지 않은 조건들을 균등하게 개선하기 위한 일에 노력을 기울입니다. 정부는 그들의 권한을 사용하여 불평등하고, 안전하지 않으며,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조건들을 막을 것입니다. 정부는 시민들이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들을 빼앗겼거나, 빼앗기려고 할 때, 그리고 기본적인 요구들이 수용되지 않을 때 간섭할

특별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의무를 다음의 방법에 의해 이행할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나 능동적인 감독시스템을 유지하는 것, 긴급준비와 긴급구조, 기술적인 지원과 자원배분, 편견이 없는 중재와 논쟁의 조정, 그리고 공평하게 표준과 규칙, 그리고 규제를 적용하는 것에 의해, 이재민, 약자그룹, 그리고 주의환경에 의해 불리하게 영향을 받을지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에 의해 이러한 의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정부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환경에서 개선을 이루기 위하여 적당하고 적절한 금융자원을 만들고 배분하는 일에 노력을 기울입니다. 정부는 그들의 특별한 권리를 사용하여 공공 프로젝트, 공공프로그램, 그리고 참여과정에 적당한 금융지원을 하고, 민간부문과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금융지원을 권장합니다. 정부는 다른 수단들 가운데 세금을 책정하고, 공채를 발행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통하여 수입을 증가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당한 계획과 프로그램, 그리고 예산절차를 통하여 정부는 이용가능한 자원에 우선적인 요구들을 수용할 것입니다. 정부는 공해를 입히는 자와 자원의 사용자로부터 비용을 회수할 것입니다. 모든 세금들은 공정해질 것이고 강제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정부의 더 낮은 충으로의 프로그램 의무의 양도와 비례하여 소득징수의 권한을 양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방층에서 경험적으로 정의된 필요에 기초하여 소득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것입니다. 은행과 다른 자본의 원천들은 저소득 가구를 위한 금융시스템을 설치하도록 권장받을 것이고, 정부는 그 같은 기관에서의 위험을 책임져 줄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충에서 인간적, 기술적, 제도적 그리고 금융적 자원들의 효과적인 이동과 적용에 장애가 되는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입니다. 정부는 사람중심적인 거주와 거주지 정책, 프로그램의 수행, 그리고 이용가능 자원의 효과적인 이용에 방해가 되는 장벽을 제거할 것이다. 장벽들은 특히나 배타적인 규제와 법령, 금지적인 표준, 불평등하고 반생산적인 세

금법, 특별히 여성에 의한 교통과 원거리통신 시설의 부족, 토지와 신용에 대한 접근의 부족이 포함될지도 모릅니다.

▣ 정부는 전세계적인 탈문맹과 지속적인 일반교육을 지원하는데 노력을 기울입니다. 정부는 그들의 자원과 권한을 사용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한 탈문맹과 교육을 달성할 것입니다. 언어의 능력은 모든 사람을 위한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있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요구를 표현하는 것, 정의와 진실, 그리고 의견에의 접근을 허용하는 것, 그리고 응집력과 사회의 결속을 지원하는 것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교육은 문화적인 읽고 쓰는 능력을 만드는데 그리고 시민참여의 정신을 불어넣는데 있어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모든 사람, 지도자들과 정부관리자, 그리고 도시화과정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들이 사용가능하고 시기적절한 정보에의 접근을 보장하는데 노력을 기울입니다.

(i) 정부는 경쟁적인 대중매체를 통하여 검열되지 않은 정보와 의견의 교환을 권장할 것입니다. 정보에 근거한 참여를 위하여, 시민들은 꼭두각시놀음이나 이야기등의 전통적인 방법을 통해서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신문, 라디오, TV와 다른 원거리 통신망을 통하여 생각과 유용한 정보에 접근해야만 합니다.

(ii) 공개를 통하여 열리고, 자유로우며 적절한 의사소통 서비스를 모든 사람들과 조직들에게 확대하는 것이 가능해 집니다. 도시화되어가는 사회에서 경영과 행정에 있어서의 효율성과 동반자관계와 지원기관들의 유효성은 점차적으로 개인간의 원거리통신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거주지들은 원거리통신에 의해 실현된 에너지소비의 감소를 통하여 더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iii) 정부는 모든층에서 공개적으로 접근가능한 경영정보 시스템을 만들고 지원할 것입니다. 열린 정보시스템은 효과적인 참여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수적입니다. 상황을 감독하고, 문제를 인식하며, 정책을 구성하고, 그

리고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시스템들은 그 중에서도 특히 연구와 분석을 위한 전문적인 조언뿐만 아니라 공적이고 사적인 지표, 통계, 그리고 지리학적 정보를 포함할 것입니다.

(iv) 정부는 모든 주요한 개발정책, 계획, 제안들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영향분석을 요구하고, 감독하며, 그리고 평가할 것입니다. 많은 프로젝트 제안들은 초기의 분석과 재설계를 통하여 피할수도 있는 비용과 불리한 영향들을 숨겨왔을지도 모릅니다. 시기적절한 영향보고를 통한 정보는 특별한 개발정책들의 대중적인 토론에서 특별히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증가하고 있는 개발의 영향이 시간에 지나면서 축적되어질지도 모르는 지역에서, 지역을 관할하는 계획은 종합적인 영향을 고려해야만 하고, 계획에 대한 영향평가가 그 계획들이 승인되기 전까지 대중들에 의해 추진되고, 한편으로는 거부되어져야 합니다.

(v) 정부는 거주지와 거주 문제에 대한 정보의 교환에 있어서, 상호 동의했던 유리한 기초위에서, 다른 정부와 그리고 국제적인 기관과 협력할 것입니다. 유용한 국제적인 기능들은 그 중에서도 특히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합니다. 최고의 활동의 인식, 분석, 그리고 확산; 적절한 방법과 기술에 대한 평가와 이전; 전문적인 참모진의 훈련과 교환을 후원하는 것; 그리고 국가간의 망을 구축하는 것을 통한 정보흐름의 원활화;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의 경험으로부터 역량을 구축하는 것을 도울것입니다.

▣ 정부는 시민의 참여, 지속성, 그리고 균등이라는 세가지의 기본적인 정책을 구체화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전략을 앞으로 이끌어나갈 상호 일치하는 거주지와 거주프로그램과 정책들을 채택하는데 사용하기위해 노력을 기울입니다.

(i) 정부는 미래 행동을 위한 목표를 정하는 국가적인 장기적(처음에는 1996년부터 2020년까지) 거주와 거주지정책을 매 4년에서 5년마다 순환식으로 구성하고, 채택하며,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맞게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거주지와 거주를 위한 국가정책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흐름위에서, 그리고 도시와 농촌지역의 모두의 역량위에서 인식되고, 세워질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국가정책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부문들에서 통합된 공적, 사적활동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것입니다.

(ii) 정부는 일련의 측정가능한 목표와 조화로운 구조를 구성하고, 최우선 프로그램지역안에서 활동들을 수행하는 단기적(4-5년) 활동계획을 구성하고, 채택하며, 정규적으로 조정할 것입니다. 우선순위 프로그램과 다양한 부문의 프로그램은 직간접적인 지원을 포함해야만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거주지 공급, 빈곤의 감소, 환경관리, 재난에 있어서 경감과 구조, 그리고 재건설, 그리고 행정, 참여, 관리등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부문 교차적인 프로그램은 그 중에서도 특히 훈련과 교육, 참여와 원조, 방법들과 기술의 이전, 자원의 이동, 연구와 분석,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것을 나타낼 것입니다. 프로그램은 객관적이고 명백한 평가에 기초하여, 그리고 모든 사람들사이의 광범위한 토론과 통계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개선되어질 것입니다.

(iii) 정부는 국가정책과 프로그램의 수행에 대한 거주상태와 향상을 감독하고, 평가할 것입니다. 프로그램 목적과 목표에 대한 개선은 지역적으로 적당한 지표, 통계, 지역사회 조사, 그리고 다른 분석을 위한 기초를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되어질 것입니다. 정책과 프로그램에 있어서 시스템적인 조정은 정기적인 평가작업속에서 만들어 질 것입니다.

(iv) 정부는 국가정책과 프로그램의 수행에 있어서의 향상에 대한 국가적인 보고를 위하여 공통의 시스템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기술적인 협력과 자원배분을 위한 국제적인 우선권을 정하는 것을 돋기위하여, 우리는 서로 수용할수 있는 표준과 평가에 기초하여 국제적인 비교를 수행할 것입니다.

(준비위원회를 위한 설명)
회의를 위한 준비과정에 넓은 그룹의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유엔총회의 결의안에 대한 응답으로서, 가능성의 전략의 일원이 되어야만 하는 주요 그룹들에 의한 노력이 세계행동강령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러한 동반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노력들은 그들에 의해 구성되어질 것이고, 준비위원회의 3차회기가 되어서야 마무리되어질지도 모릅니다. 다음의 소개하는 내용은 이러한 동반자들의 중요성을 지적하기 위해 만들어져 왔고, 동반자들이 그들

자신의 사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져 왔습니다.

C. 비정부 조직과 지역사회 조직에 의한 노력

38. 이 행동계획의 서명자로서 비정부조직과 지역사회 조직은 정부가 가능성의 전략을 수행하는 것을 돋는 것을 통하여 여성과 남성 공히 평등하게 모든 사람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것을 약속합니다. 정부와는 다른 시민 조직으로서, 비정부조직과 지역사회조직들은 권한을 부여하는 전략의 개발에 있어서 비판적인 동반자들입니다. 비정부조직과 지역사회조직을 구성하는 조직들의 구성과 내용이 광범위할지라도, 성격적으로 비정부조직인 모든 조직들은 공통의 책임감을 갖습니다. 그러한 조직들은 시민과 사회에 있어서 다리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역할에 의하여 그들은 정부가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며, 향상시키고, 그리고 변화시키는 것을 돋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작업을 돋는 것에 의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돋습니다. 비정부 조직과 지역사회조직은 공공부문에 참여하기 위하여 시민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그들은 시민참여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일어납니다. 이러한 조직들은 연구와 교육을 통하여, 정보를 나누는 것을 통하여, 하나의 일관된 목소리를 내기위한 회담을 만드는 것을 통하여, 사회적 관심을 표현하는데 있어서의 개혁을 통하여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비정부조직과 지역사회조직은 그들과 지역사회를 직접 참여시킵니다. 이들은 인간노력의 모든 부분을 다루며, 그래서 인간주거의 지속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균등이라는 개념이 모든 시민들에 의해 공유되어지는 시민정신의 한 부분으로서 존재하는 동안에는 비정부조직과 지역사회조직은 규범을 세우는데 있어서 정부를 도울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규범의 적용을 감독하는 것을 도울수 있고,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낼 수도 있습니다.

D. 기업에 의한 노력

39. 세계적 행동계획의 서명자로서, 경영지도자 그룹들은 정부가 가능성의

전략을 수행하는 것을 돋는 것을 통하여 여성과 남성 공히 평등하게 모든 사람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으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기업부문은 생존하기 위하여 경쟁적인 위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기업의 고용인들에 대한 복지는 회사의 존속과 투자의 효과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많은 수의 기업들과 국제적인 조직들은 회사의 존속 또한 고용인들에 대한 복지와 회사가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사회에서의 투자에 의해 결정될수 있다는 것을 점차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경영지도자들은 아직은 회사의 전반적인 상태에 대하여 이익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회사활동의 일상적인 기초들을 넘어서는 그들의 활동을 이끌고 있는 새로운 사회와 시민의 책임을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그들 자신의 회사에서, 경영지도자들은 그들의 고용활동, 보상급료 규모, 위생과 안전의 상태, 훈련, 그리고 직업적 관계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사회적 대차대조표를 만들지도 모릅니다. 많은 기업들은 그들의 창조적인 능력을 이용하여 그들의 영향력의 범위 안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며, 가난과 문맹과 싸우고 있고 또한 학문적인 개혁과 더 나은 환경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또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것을 돋기 위하여 학계, 다른 기업, 작은 하청업체들, 그리고 정부와 함께 협력관계를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도구가 됩니다. 많은 고용인들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고용인의 반응을 나타내고, 회사내에서 개선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자발성을 격려하고 지원합니다. 도시들은 역사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으로서 번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속적인 도시들은 기업들이 사회적인 투자를 하고, 생산적인 직업에서 투자를 했던 도시들입니다. 민간부문은 또한 개인이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대해 그들 자신의 요구를 초월해서 바라볼수 있도록 고무시키고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규범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부를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생활에서 능력있는 그들의 위치를 통하여 경영지도자들은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시민정신의 후원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E. 학계와 과학기관에 의한 노력

40. 세계적 행동계획의 서명자로서, 학계와 과학기관들은 정부가 권한을

부여하는 전략을 수행하는 것을 돋는 것을 통하여 여성과 남성 공히 평등하게 모든 사람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것을 약속합니다. 학계와 과학적 기관들은 교육, 발견, 조사, 그리고 개혁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능성의 전략의 개발에 있어서 비판적인 동반자입니다. 우리의 도시들을 구성하는 많은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회인 학계는 선생님으로서의 그들의 역할을 이용하여 학생들, 교수진, 그리고 지역사회와 같은 곳에서 시민 참여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이해의식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학계와 과학기관들은 많은 기술적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인간생활의 모든 부문에서 개혁적인 요소들을 찾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정책입안자와 개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에게 인간주거의 지속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새롭고, 더 나은 방법들을 제공할 것입니다. 균등이라는 개념이 모든 시민들에 의해 공유되어지는 시민정신의 한 부분으로서 존재하는 동안, 학계와 과학기관들은 규범을 세우는데 있어서 정부를 도울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관들은 배우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뿐만아니라, 개인에 있어서 시민정신을 불어넣는데 있어서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F. 전문가연합들에 의한 노력

41. 세계적 행동계획의 승인자로서, 전문가연합들은 정부가 가능성의 전략을 수행하는 것을 돋는 것을 통하여 여성과 남성 공히 평등하게 모든 사람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것을 약속합니다. 건축가, 설계사, 측량사, 기술자, 변호사, 물리학자 그리고 많은 부문을 포함하는 전문가들은 그들이 하는 일을 통하여 매일 생활환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시화 과정에서 개인으로서 그리고 활동가로서, 전문가들은 가능성의 전략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비판적인 동반자입니다. 시민들이 그들의 사회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할 공간을 창조하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행해야 하는 일입니다. 전문가들의 연합들은 그들의 구성원 사이에서, 그리고 시민들사이에서 이러한 시민참여의 전망을 지원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의 기술자들로서, 전문가들은 인간주거의 지속성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비판적인 동반자들입니다. 균등이라는 개념이 모든 시민들에 의해 공유되어지는 시민정신의 한 부분으로서 존재하는

동안, 전문가들은 규범을 세우는데 있어서 정부를 도울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범들은 전문적인 기술들을 현재의 거주지를 사는데 있어 더나은 장소들로 만드는 사업으로 적용하는데 있어 한계이자 동시에 목표이기도 합니다.

G. 언론과 매체사회에 의한 노력

42. 세계적 행동계획의 승인자로서, 언론인과 방송 전문인들의 사회는 정부가 가능성의 전략을 수행하는 것을 돋는 것을 통하여 여성과 남성 공히 평등하게 모든 사람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것을 약속합니다. 대중매체는 정보를 모으고, 의사소통시키는 이중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매체는 정보화된 사람들에 위한 시민 참여를 위한 조건을 만드는것을 돋습니다. 많은 방송전문인들은 정부와 정부가 봉사하기로 되어있는 사람들사이의 중재자로서 그들의 위치에 의해 그들에게 부과된 책임을 인식합니다. 방송의 오락적인 잠재성을 강조하는 것에 의해 비판적인 문제들로부터 관심을 끌어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책임감있는 방송인들과 방송 관리자들은 그들의 재량권을 사용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결정과 사건을 이해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돋는데 있어서 신문, 라디오, 그리고 TV는 시민참여를 인식시키고, 계몽하며, 지원하는 사회적 노력을 기울입니다. 방송은 대중의 눈과 귀가 되며, 그래서 개인에 의해서 인식될수는 없지만, 그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사건들에 대하여 보도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적응으로부터 나오는 지속성은 이러한 상태에 대한 보도없이는 발생할 수 없다. 매체들은 또한 그들의 청취자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만들어진 발전을 감독하고, 공공의 이익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공공과 민간의 부정 행위에 대해 편견없고 독립적인 보도를 수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회에서 인간의 이해를 따르는 것에 의해, 매체들은 균등한 시민참여의 개발을 도울수 있습니다.

H. 재단과 자선단체에 의한 노력

43. 세계적 행동계획의 승인자로서, 재단과 비영리 자선단체들은 정부가

가능성의 전략을 수행하는 것을 돋는 것을 통하여 여성과 남성 공히 평등하게 모든 사람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것을 약속합니다. 재단과 다른 그같은 조직들은 과학기술의 이전에 있어서의 사회적 논쟁거리에 대한 연구로부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을 지원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공공의 이익이 있는 많은 활동을 지원합니다. 재단들은 정부에 의해 응용된 방법들과 기술의 선도실험을 위해 예산외의 자원을 오랫동안 지원해 왔습니다. 시민참여의 정신을 지지하는 이러한 프로그램, 프로젝트, 그리고 생각들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선택에 의해, 재단과 다른 자선단체들은 가능성을 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을 도울수 있습니다. 재단은 또한 다른 조직들 가운데에서 비정부조직과 시민사회조직의 일을 지원하고, 그래서 빈민과 다른 약자그룹들쪽으로 향하는 정부의 능력을 개선합니다. 균등이라는 개념이 모든 시민들에 의해 공유되어지는 시민정신의 한 부분으로서 존재해야만 하는 동안, 재단과 자선단체들은 그들의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규범을 세우는데 있어서 정부를 도울수 있습니다.

I. 다른 부문에 의한 노력

44. 세계적 행동계획의 승인자로서, 국제조직들은 정부가 가능성의 전략을 수행하는 것을 돋는 것을 통하여 여성과 남성 공히 평등하게 모든 사람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것을 약속합니다. 국제기구들은 가능성의 전략의 개발에 있어서 비판적인 동반자이며, 공통의 책임을 공유합니다. 국제기구들은 가장높은 우선권이 존재하는 프로그램 지역에서 가능한 활동의 지원으로 수반되어질지 모르는 외부자원의 관리인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자원과 도덕적인 설득을 통하여 그들의 정부와 함께 시민들을 연결하는 국가적인, 하부국가적인 활동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부가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을 향상시키며, 변화시키는것을 돋습니다. 또한 주요활동가 그룹들사이의 협력관계를 만드는 것을 돋고, 그것에 의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돋습니다. 국제기구들은, 지속적이고, 균등한 인간주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첫번째 우선순위로서, 모든 주요 그룹들사이에서 역량을 만드는 것에 돋니다. 이것은 가능성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조직들은 인간주거에서 지속성과 균등을 이끌어내지 않는 국가적인 또는 국가하부적인 활동들을 지원하는 것을 피해야만 합니다. 국제기구들은 가능성에 대한 진보를 감독할 수도 있고, 국가들사이의 의사소통라인을 유지할 수도 있으며, 시민들의 요구에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정책과 좋은 활동들의 국가적, 지역적 채택을 포함하는 세계적인 흐름과 상태에 대한 비교가능한 자료와 정보의 기본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